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

2023. 7. 4.

관계부처합동

순 서

I. 그간 정책대응 및 평가 ······· 1
Ⅱ. 향후 경제여건 점검 2
Ⅲ. 2023년 경제전망5
Ⅳ.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6
1. 경제활력 제고 7
2. 민생경제 안정 20
3. 경제체질 개선 31
4. 미래대비 기반 확충 40
[별첨1] 2023년 상세 경제전망 45
[별첨2]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요 정책 캘린더 … 53

Ⅰ. 그간 정책대응 및 평가

□ 자유시장경제 복원 및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에 주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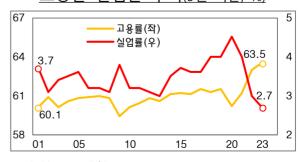
- 건전재정 기조 下에 경제운용을 민간·시장 중심으로 전면 전환
 - 규제혁신, 세부담 완화, 세일즈 정상외교 등으로 민간 중심 수출·투자활력을 지원하고, 부동산 세제·규제 정상화
 - * 국가전략기술 세제혜택 확대,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, UAE 300억불 투자 유치 등
 - 비상경제체제로 전환하고 글로벌 복합경제위기에 적극 대응
 - * 거시·금융 정책당국간 긴밀한 공조체계 가동, 50조원+α 유동성 공급 등
 - 물가안정과 함께 두텁고 촘촘한 약자복지 등 민생회복에 주력
 - 노동·교육·연금 등 3대 구조개혁, 과학기술·첨단산업 육성 등 근본적 체질개선 및 생산성 향상 노력 병행
- o 대외여건 악화로 상반기중 수출 중심의 경기둔화 흐름 지속
 - 반도체 등 IT 부문 수출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, 에너지 수입 증가 등으로 무역수지도 악화
 - * 수출(전년동기비, %) : ('22.3/4)5.8 (4/4)△10.0 ('23.1/4)△12.7 (4)△14.4 (5)△15.2 (6)△6.0
- 다만,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물가·고용 등 민생지표는 비교적 양호
 - 물가는 상승세가 확연히 둔화*되고, 고용도 역대 최고 고용률 (5월 63.5%) 및 최저 실업률(2.7%) 기록
 - * 6월 소비자물가 2.7%(21개월만에 최저), 생활물가 2.3%(27개월만에 최저)

주요국 물가 상승률 추이(%)

12 8 9 인국 0 21.1 7 22.1 7 23.1 6

* 출처 : 각국 통계청

고용률·실업률 추이(5월 기준, %)



* 출처 : 통계청

Ⅱ. 향후 경제여건 점검

◇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물가·고용 등 민생지표는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겠으나, 불확실성도 상존

1 경기 여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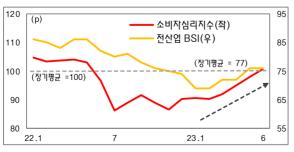
□ (대외) IT 중심 제조업 경기가 점차 개선되겠으나, 불확실성 지속

- 상반기중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서비스업에 집중되며 제조업 경기는 예상보다 부진했으나, 하반기로 갈수록 개선 예상
 - * 글로벌 PMI('22.12→'23.3→5월): (제조업) 48.7→49.6→49.6 (서비스업) 48.1→54.4→55.5
 - 반도체 업황도 주요 기업 감산효과 등으로 점차 회복 기대
 - * 글로벌 D램 매출(십억불, Gartner(6월)) : ('23.1/4) 9.6 (2/4^e) 9.8 (3/4^e) 10.9 (4/4^e) 13.4
- 다만, 고금리 영향에 따른 미국 성장세 둔화 및 중국경제
 회복 지연 가능성 등 불확실성 상존

□ (대내) 완만한 소비 회복세 지속, 수출도 점차 개선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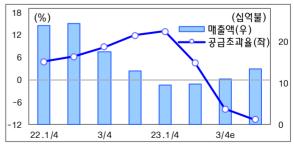
- (소비) 고금리 등 제약요인에도 불구, 양호한 고용상황·누적된 저축·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 지속 전망
- (수출) IT 업황 회복 영향 등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그간 수출 부진을 주도했던 반도체 등의 실적 개선 예상
- (투자) 기업심리 개선 등은 긍정적 요인이나, 대외 불확실성
 및 건설투자 선행지표 둔화*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
 - * 건설수주(전년동기비, %) : ('22.1/4) 13.2 (2/4) 22.2 (3/4) 30.5 (4/4)△17.4 ('23.1/4)△11.1

소비자심리·기업경기실사 지수



* 출처 : 한국은행

<u>글로벌 D램 공급초과율 및 매출 전망</u>



* 출처 : Trendforce(6월), Gartner(6월)

2 금융·부동산시장 여건

□ 최근 변동성이 완화된 가운데, 취약부문 리스크에 유의 필요

- (금융) 인플레 압력 둔화, 시장안정조치 등으로 변동성 완화
 - * 코스피(pt, 기말): ('23.2) 2,413 (3) 2,477 (4) 2,502 (5) 2,577 (6) 2,564
 - * 원/달러 환율(기말): ('23.2) 1,323 (3) 1,302 (4) 1,338 (5) 1,327 (6) 1,318
 - 다만, 그간 누적된 금리인상 및 건설경기 둔화 영향 등으로 부동산 PF, 한계기업 등 취약부문 리스크 요인 잠재
- (부동산) 주택가격은 완만한 조정이 이루어지는 가운데, 심리· 거래가 회복되는 등 시장 연착륙 진행중
 - * 서울 APT 매매수급지수(100↑:사자>팔자): (4.1주)71.4 (5.1주)76.2 (6.1주)83.9 (4주)85.4
 - * 전국 APT 거래량(만건, 국토부): ('23.1) 1.8 (2) 3.1 (3) 3.9 (4)3.5 (5) 4.1
 - □ 다만, 역전세 우려 등 임대차 시장을 중심으로 서민 주거 안정 저해요인 집중 관리 필요

3 민생 여건

□ (물가) 불확실성은 있으나, 상승세 둔화 흐름 지속 전망

- 소비자물가는 원자재가격 안정, 정책지원 효과, 서비스가격 상승세 와화 등으로 둔화 흐름 지속 전망
 - * 국제 원자재가격(1~6월 전년동기비,%): (두바이유)△22 (천연가스)△49 (밀)△31
 - □ 다만, 기상여건, 지정학적 리스크*등에 따른 국제 원자재가격 불확실성과 일부 누적된 요금인상 압력 등 부담요인 상존
 - * 러·우 전쟁 향방, OPEC⁺ 추가감산 여부, 흑해곡물협정(~'23.7월) 연장 여부 등

국제원자재 가격 추이

120 (\$/b) (센트/부셀) 1200 1000 90 80 무바이유(좌) 90 22.1 7 23.1 6

* 출처: 페트로넷, CBOT

'23.1~6월 평균 품목별 물가상승률



* 출처 : 통계청

□ (고용) 서비스업 중심으로 양호한 고용상황 유지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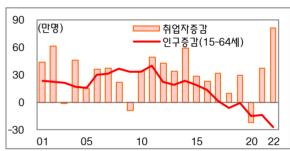
- 대면서비스·보건복지업 중심의 양호한 취업자 증가세를 이어 가며 고용률·실업률 개선 흐름 지속 전망
 - * 취업자증감(만명): ('22) 82 ('23.1~5) 38 [<서비스업>+47 <제조업>△5 <건설업>△3]
 - 노동 공급 측면에서도 생산연령인구 감소에도 불구, 여성· 고령층 경제활동 참여가 크게 확대되며 취업자 증가 뒷받침
 - * '22→'23년 경제활동참가율(1~5월 기준, %, <전년동기대비>): (전체) 63.4→63.9<+0.5%p> (여성) 53.9→55.1<+1.2%p> (65세이상) 35.9→37.3<+1.4%p>

산업별 취업자 증감



* 출처 : 통계청

인구 및 취업자 증감 추이



* 출처 : 통계청

4 구조적 여건

□ 인구위기·생산성 정체·글로벌 분절화 등 구조적 대응 가속화 필요

- 생산연령인구 감소세가 심화되며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제약
 - * 생산연령인구 증감(만명, 15~64세) : ('10) 34 → ('15) 19 → ('20)△15 → ('25°)△32
-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규제혁신 및 3대 구조개혁, 시장 경쟁 촉진, 과학기술·첨단산업 육성 등 통한 생산성 향상이 관건
 - * 총요소생산성(미국 = 100 기준) : (獨) 92.7 (佛) 90.9 (英) 78.7 (日) 65.6 (韓) 61.4
 - * 노동시장 경쟁력 141개국중 51위, 노사협력 순위 130위 (WEF, '19년)
- 기후·에너지 위기, 세계경제 블록화·분절화 및 경제안보 등 글로벌 경제질서 변화에 대한 대응도 가속화 필요
- ☞ 국내외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점검·관리하는 가운데, 경기 반등 및 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하면서 체질개선 및 미래대비 노력 지속 필요

Ⅲ. 2023년 경제전망

	2022년	202	2023년 ^e	
	2022단	[당초]	【수정】	2024년 ^e
· 경제성장률(%)	2.6	1.6	1.4	2.4
· 취업자 증 감(만명)	81.6	10	32	18
- 고용률(%, 15세 이상)	62.1	62.1	62.5	62.7
- 실업률 (%, 15세 이상)	2.9	3.2	2.7	2.9
■ 소비자 물 가(%)	5.1	3.5	3.3	2.3
■ 경상수지(억불)	298	210	230	450
- 수출 (전년비, %)	6.1	△4.5	△6.6	8.8
- 수입 (전년비, %)	18.9	△6.4	△8.6	3.0

- 【성장) 금년 성장률은 상반기 부진으로 당초 예상(1.6%)을 하회하겠으나,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개선되고 내년 본격 회복 전망 ('23.上 0.9% → '23.下 1.8% → '24년 2.4%)
 - **대외여건 악화**로 크게 감소했던 **수출**은 **IT 경기 회복** 등으로 **반도체** 중심으로 **점차 개선** 전망
 - * 수출(전년동기비, %): ('22.4/4)△10.0 ('23.1/4)△12.7 (4)△14.4 (5)△15.2 (6)△6.0
 - 민간소비는 양호한 고용상황, 누적된 저축, 소비심리 개선 등 감안시 하반기에도 완만한 회복세 지속 예상
- □ (고용) 취업자수는 상반기 실적 호조(1~5월 +38만명) 및 서비스업 일자리 수요 회복 지속 등으로 전년대비 32만명 증가 전망
 - 이에 따라 당분간 고용률 및 실업률 개선 흐름 지속 예상
- □ (물가) 국제 원자재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서비스업 상방압력도 점차 완화되며 금년 3.3% 상승 전망('23.上 4.0% → '23.下 2.6%)
 - * 국제 원자재가격(1~6월 전년동기비,%): (두바이유) △22 (천연가스) △49 (밀) △31
 - 다만, **지정학적 리스크**, **누적된 요금인상 압력** 등 부담요인 상존
- □ (경상수지) 수출 회복 등으로 상품수지가 개선되겠으나, 해외여행 확대 등으로 서비스수지가 악화되며 230억불 수준 흑자 전망

Ⅳ.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

- ◇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'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큰 틀을 일관성 있게 지속 추진하면서 국민 체감 성과 창출에 주력
 - '경제활력 제고' + '민생경제 안정' + '경제체질 개선' 등 성과 창출 3대 중점 과제와 '미래대비 기반 확충' 등 중장기 과제 추진
 - 이 이를 통해 '자유시장경제' 복원 및 '글로벌 선도국가' 도약 기반 마련

자유시장경제 복원 +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

경제활력 제고

민생경제

안정

경제체질 개선

- ✓ 거시·금융관리 강화
- ✓ 수출·투자 촉진
- ✓ 지역경제 활력 제고
- ✓ 내수 활성화

- ✓ 물가·생계비 부담 경감
- ✓ 주거 안정
- ✓ 일자리 확충
- ✓ 약자복지·취약계층 지원

- ✓ 과학기술·첨단산업 육성
- ✓ 구조개혁 가속화
- ✓ 경제·규제 혁신
- ✓ 공정·상생 촉진

미래대비 기반 확충

- ✓ 저출산·고령화 대응
 ✓ 국제연대·경제안보 강화
 ✓ 기후·에너지 위기 대응

1. 경제활력 제고

- 1 기시 · 금융관리 강화
- ◇ 물가안정에 유의하면서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 등 거시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조합을 신축적으로 운영
- \square 치질없는 재정집행 및 정책금융 · 공공기관 등 15조원+ α 추기재원 투입
- (중앙) 세수 재추계(8월말~9월초)를 실시하고 세계잉여금·기금 등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민생 등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
 - **낙찰차액** SOC 등 **재투자**, 민자 보상자금 **선투입*** 등으로 재정집행 여력 보완
 - * 사업시행자가 사업 보상비 先지급 → 주무관청은 준공 전까지 예산 확보·지급
 - 국가계약 한시 특례^{*}를 연말까지 연장하여 적극적 투자 유도
 - * 선금지급 한도 확대(70→80%), 입찰공고기간 단축(7→5일) 등
- (지방) 여유재원* 활용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·민생 중심으로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
 - * 순세계잉여금(16조원), 통합재정안정화기금(12조원) 등
 - 재정집행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·균특회계 인센티브 부여
- (공공기관) <u>'23년 투자계획의 100% 집행, 내년 사업 당겨집행</u> 적극 유도* 등을 통해 하반기 2조원 수준 추가 집행
 - * 공공기관 재무성과 평가시 당겨집행 실적 고려(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수정)
- (정책금융) 하반기중 당초 계획 대비 13조원 확대*된 242조원 공급
 - * 무보, 기은, 산은, 수은, 기보, 지신보, 신보, 중진공 기준
- (민자사업) 하반기에 총사업비 7.0조원 규모의 대규모 신규 사업*을
 착공하여 금년 투자목표(4.35조원) 달성
 - * GTX-C(4.4조원), 동부간선도로 지하화(1.1조원), 대전 하수처리장 현대화(0.7조원) 등

② 유동성 공급 확대 및 수급개선 등으로 금융·외환시장 안정 유도

- (자금·채권시장) 35조원+α 시장안정조치는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*하고, 장단기 시장부담 완화 노력 지속
 - * 비우량물 매입 확대, 업권별 규제(LCR, 예대율)완화 조치 연장 여부 등 <한은 시장안정조치 연장여부·기간 등은 금통위에서 검토>
 - 우량채 하반기 발행물량·시기 조절 등으로 채권 수급 개선
 - ▶ (국고채) 상반기 대비 30조원 수준 대폭 축소
 - ▶ (한전채) 재무여건 개선 노력 등을 통해 장기사채 발행을 상반기 대비 1/3 이하로 축소
 - ▶ (MBS) 은행권 특례보금자리론 MBS 매입협의 등으로 시장부담 완화
 - ▶ (은행채) 발행한도 기준: (現) 월별 만기도래분의 125% → (改) 분기별 만기 도래분의 125% (분기 발행한도 내에서 월별 발행은 탄력 조절 가능)
 - 채권시장의 구조적 안정을 위한 **장기채 시장 활성화** 노력 병행
 - ▶ (국고채) 안정적 장기채 발행기조를 지속하고, '24.1/4분기 30년 국채선물 상장 추진을 위한 국고채 전문딜러 평가 개선방안 등 마련('23.4/4)
 - ▶ (은행채) 예대율 규제완화 등으로 커버드본드 활성화 유도
 - ▶ (외화채) 대외 건전성을 확고하게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장기물 중심으로 공공기관 및 은행 등의 원활한 외화채권 발행을 뒷받침
 - <u>공공기관·금융회사·대기업 퇴직연금(DB형)의 만기분산 등*을</u> 추진하여 특정시기 **자금이동 집중을 방지**
 - * 부담금 납입 일정 분산 및 운용상품 만기 다양화 권고, 금리 공시 대상 확대 등
- (금융·외환시장) 유동성 공급 기반확충을 위한 해외자금·투자 유입 확대 및 시장 선진화 유도
 - (주식) 외국인 투자자 **등록제 폐지**('23.12), **다자간매매체결회사** (ATS) **인가** 추진('23.下) 등으로 주식시장 선진화 유도
 - (외환) 시장내 외국 금융기관 참여^{*} 및 <u>외평채 발행(하반기중</u> <u>27억불 한도)을 추진</u>하고, 한일간 100억불 달러화 통화스왑 체결
 - * 하반기중 외국환거래법령 개정을 추진하고, '24년 시행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
 - (국채) 국채통합계좌 개통 등 시장접근성 제고 노력을 지속 하고 세계국채지수(WGBI) 신속 편입 추진

③ 가계부채·부동산F·한계기업 등 잠재리스크 관리강화

- (가계부채) 양적 관리·질적 개선^{1」}노력을 병행하고 연체 위기자 대상 채무조정 특례제도^{2」}운영 및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 추진
 - 1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대환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완화 추진
 - 2」약정이율 30~50% 인하, 10년 이내 분할상환기간 연장, 원금납입 유예 제공
- (부동산 PF) 시업장 관리, 유동성 지원,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정상화 추진
 - 캠코 PF펀드*, 「PF 대주단 협약」을 통한 권리관계 조정 등 적극 활용
 - * 현재 1조원 규모, 필요시 투자수요·재정여력 등을 고려하여 규모 확대 추진
 - HUG 중도금대출 보증비율 상향(80→90%) 등을 통해 은행의
 부동산 PF 관련 대출 미회수 위험 완화
 - 건설사 대상 PF대출 보증요건 완화¹ 및 회사채 발행 지원² 등 병행
 - 1」 미분양 PF 대출보증 심사시 분양가 할인 외 다양한 자구노력(무료 발코니 확장 등)도 반영
 - 2 및 민간 건설사-금융사간 자발적 협약펀드 사례 홍보하고 주채권은행 등 참여 독려
 - ※ 필요시 건설공제 조합 보증 활용 방안 등도 검토(PF대출 보증 등 신규 금융상품 도입 추진)
 - 부동산PF 리스크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검토(연구용역 등)
- (건전성) 손실흡수 여력 확대^{1」}, 부실채권 관리 기반확충^{2」} 등 으로 연체율을 장기추세 수준에서 관리
 - 1」(은행) 경기대응·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 본격 시행 (상호금융) 부동산·건설업 대출 충당금 적립률 상향(100→130%) (저축여전)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대손충당금 적립(40%)
 - 2」 개인 연체채권 매각기관 확대(캠코 → 유동화전문회사 추가), 대손상각 신속 승인 등
 - <u>디지털 뱅크런 등에 대응하기 위해 **한은 대출제도 개편** 등</u> 정책수단 확충을 검토하고 **예보 금융안정계정*** 신속 도입
 - * 금융회사 부실 예방 및 위기사전 차단을 위해 위기징후시 채무보증자본확충 등 선제 지원
 - 기안기금의 <u>운용기한('25.末), 지원 목적·업종 등 전면 재검토</u>
 - * 現 지원업종: 항공, 해운, 자동차, 조선, 기계, 철강, 정유, 항공제조, 석유화학 등
- (한계기업) <u>이중과세 해소*</u> 등으로 원활한 기업구조혁신편드
 (4호, 1조원) 집행('23.4/4) 지원 및 구조조정 활성화 유도
 - * (現)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단계[최초 출자자→모펀드→ 자펀드]에서 2회 과세 → (改) 최초 출자 단계에서 1회만 과세
 - <u>소상공인 등의 도산제도 접근성 제고 위해 **법원 상담 서비스 확대**</u>
 - * (現) 회생법원만 상담센터 운영 \rightarrow (改) 일반 지방법원도 회생법원과 연계해 상담(회상) 제공

◇ 수출·투자가 하반기 경기 회복 모멘텀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

① 조속한 수출 플러스 전환 및 수출경쟁력 확충 뒷받침

- (지원체계)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 및 범부처 수출투자대책 회의 등을 통한 수출지원 방안 지속 마련*
 - * (하반기 중점과제) 스마트팜, 방산, 에너지 등 신수출동력 분야, 무역금융 등 수출 인프라
 - <u>찾아가는 원스톱 수출 119¹」, 「범정부 통합 수출 해외전시회</u> 신청 플랫폼^{2」}」등 수요 중심 지원체계 구축 추진
 - 1」월 1회 권역별 국가산단 및 지방 일반산단 방문 → 1:1 상담 및 수출정책 설명회 개최 2 범정부 통합 모집·신청 → 부처별 지원대상 선정 → 지원 성과를 관계부처가 공유
 - 10대 수출 유망국* 대상 무역사절단을 파견하여 바이어 매칭 등을 지원하고 샘플 운송비 등 후속 수출성과 창출 지원
 - * 시장조사를 통해 유망국 풀(Pool)을 마련하고 정상회담 등과 연계하여 확정
- (인센티브) 중소·다변화 수출기업 중심으로 정부지원 보강·개선
 - (금융) <u>하반기중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인 184조원 공급하고</u> 중소기업¹ 및 수출 다변화 성공기업² 대상 금융지원 강화
 - 1 중진공 수출 중소기업 대출지원: (現) 3,570 → (改) 5,070억원(+1,500억원)
 - 2」 (중진공) 이차보전 혜택 확대(2→3%p), (기보) 보증료 감면·보증비율 상향, (수은) 대출금리 우대
 - (세정) 우수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분야 세정지원(납세기한 연장·분할납부 허용, 담보제공 생략 등) 및 관세조사 유예 확대*
 - * (現) 13개(혁신형 중소기업 등) → (改) 19개(일자리 창출기업·우수 수출 중소기업 등 추가)
 - (재정) <u>수출바우처 이용편의를 제고*하고 수출다변화 중소기업에</u> 대한 **우대 지원**(지원한도 상향 및 자부담률 완화) 등 추진('24)
 - * 사용기관 자율선택 분야: (現) 운송전시회 등 \rightarrow (改) 서류대행·현지등록 등으로 확대
 - (인프라)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 개통(인도·베트남), 국내 최초 완전 자동화 컨 터미널 준공, 보세제도 개선* 등 통관·물류지원 강화
 - * 보세공장·보세창고 특허요건 완화 및 기능확대 등 보세제도 규제혁신방안 마련('23.7)

② '23년 350억불 해외수주 달성을 목표로 전방위적 지원 추진

- (국제협력 강화) 정상 세일즈 외교 등 국가간 협력 강화 및 전략적 ODA 등을 바탕으로 대형 수주 및 발주 지원
 - <u>고부가 EDCF</u> 사업 승인¹ 및 EDCF 기본약정 **신규체결·증액**², 필리핀, 인니 등과 EDPF **협력약정** 신규 **체결** 등 추진
 - 1」 방글라데시 카르나풀리 교량 건설(7.8억불), 케냐 콘자 디지털 미디어시티(1.3억불) 등
 - 2」(신규) 인도, 르완다, 코트디부아르 등 / (증액갱신) 베트남, 우즈베키스탄 등
 - 해외 주요 발주처와 우리기업간 네트워킹 지원* 추진
 - * 셔틀 경제협력단 파견('23.3/4), 사우디 네옴시티 전시회('23.7) 및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('23.9) 개최 등
- (시스템 보강) 대형 해외수주 등이 실제 수출로 원활히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·세제 등 수주지원 시스템 보완
 - 저신용국 리스크 분담 및 대규모 지원 필요성에 대비하여 수은의
 특별계정 출자^{*}를 지원하고, 법정자본금 한도(現 15조원) 상향 추진
 - * 저신용국(국가신용도 B+ 이하) 인프라사업 수주시 정책금융 공급(現 1.1조원)
 - <u>정책 금융기관(산은·수은 등)이 대표 금융주선자로 취득한 대출</u> 채권을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*
 - * 공개경쟁입찰 등을 원칙으로 하는 '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' 적용사항이 아님을 명확화하여 일반 금융기관처럼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도록 지원
 - 국내 건설사 해외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* 추진
 - * 해외건설수주에 따른 대손 위험 완화를 위해 국내건설기업이 해외현지법인에 지급한 대여금에 대해 회수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해당 대여금에 대손충당금 설정 허용
- (애로 해소) 인프라·방산·원전 등 대형수주 범정부 지원 노력 강화
 - (해외 인프라) 해외 인프라 금융투자 협의체를 통한 대형 사업 공동투자 방안 협의, 원팀 코리아 수주지원단 파견 등 지속
 - (방산) '27년 방산수출 4대강국을 목표로 방산전시회·고위급 면담 계기 무기체계 홍보·협력강화 등 추진
 - * MSPO(폴란드 국제방산전시회, '23.9), ADEX(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, '23.10) 등
 - (원전) 수주 유망국과의 협의를 지속하고, 원전 공기업과 기자재 협력업체 동반진출, 원전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* 등 지원
 - * '27년까지 독자수출 중소기업 100개사 육성 목표로 시장조사마케팅금융벤더등록 등 지원

③ 금융·세제 등 투자 인센티브 확대하고 투자 유형별 지원 강화

- (투자기반 확충) 투자자금 확대, 세부담 완화 등 투자확대 여건 조성
 - (금융) <u>하반기 26조원 규모 시설투자 자금을 공급하고 공급</u> 가속화를 위한 **대출한도 상향***, 기업별 **맞춤 컨설팅** 등 추진
 - * (신보) 100→150억원<수출기업>, (지신보) 보증한도를 확대한 신규상품 출시 추진 등
 - (세제) 국가전략기술·시설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(수소·미래형 이동수단·바이오의약품 등)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활용도 제고*
 - * 협·단체 등 찾아가는 간담회 개최, 지방국세청 「법인세 공제·감면 컨설팅」제공
 - (관세) 나프타·나프타 제조용 원유 관세인하(0.5—0%, ~12월末) 및 반도체 등 제조설비의 물품운반용 기구 등 재수출면세 적용 추진
 - (입지) 항만배후단지 입주업종·임대면적 제한 완화
 - * (업종) (現) 주거·판매시설 등만 가능(배후단지 2종) → (改) 위험·유해시설 외 모두 허용 (면적) (現) 15만m² 이내로 제한(배후단지 1종) → (改) 물동량, 고용 등을 고려해 확대 허용
- **(외투)** <u>국가 최고위급 **투자유치 행사**(가청Invest Korea Summit) 개최</u> ('23.4/4) 및 인센티브 확충
 - <u>외투기업 대상 현금지원 규모*를 확대하고('24), 신청 후 지원한도</u> 산정시까지 **소요시간 단축**을 위한 **처리기한 신설** 등 검토
 - * 현금지원 예산(억원): ('19) 500 ('20) 280 ('21) 600 ('22) 500 ('23) 500
 - <u>외투기업 종사 외국인 근로자^{1」}에 대한 단일세율 적용 및</u> <u>외국인 기술자^{2」} 소득세 감면 일몰('23.末) 연장 추진</u>
 - 1」 단일세율(19%), 종합소득세율(6~45%) 중 선택(20년간) / 2」 소득세 50% 감면(10년간)
- (유턴) 첨단전략산업 리쇼어링 유도를 위해 <u>반도체 등 첨단전략</u> 산업 유턴에 대해서는 최소 외국인투자 수준*으로 지원 강화
 - * 국가전략기술, 첨단전략기술에 대해 투자금액의 50%까지 지원(외투위 의결로 한도 설정)
 - <u>유턴 세제혜택이 인정되는 업종 동일성 기준을 유연화하여*</u> 사업구조 전환을 수반한 유턴을 촉진
 - * (예) 내연차 부품 기업 → 국내복귀시 전기차 부품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인정

- (사업재편) 현장 사업재편 수요를 고려하여 <u>기업활력법상 지원</u> 대상 및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상시법 전환 추진
 - ▶ (대상) (現) 과잉공급 완화, 신산업(규제샌드박스 조특법상 신성장원천기술) 진출, 산업 위기지역 위기극복 → (改) 공급망 대응 추가, 신산업에 소부장 포함
 - ► (지원) 간이합병 허용 범위 확대 [존속회사의 소멸회사 보유지분: 80/100 → 2/3 이상] 지주회사 규제 유예 특례 기간[現:3년] 연장
 - ▶ (**관리**) 사업재편 컨설팅 확대, 사업재편 이행평가 후 우수기업 인센티브 부여 등
- (민자) 사업절차^{1」} 및 규제·제도 개선^{2」} 등으로 사업 신속추진 유도
 - 1」하반기중 조세재정연구원의 적격성조사 착수를 위한 인력 등 확보, 제안서 작성부담 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
 - 2」 민투법상 SPC 임원겸임시 기업결합 신고 대상 제외 검토, 민자투자 모델 다양화 (개량운영형 세부 모델 제시,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신규모델 검토) 추진 등
 - 민자사업 부가세 영세율 적용 특례 일몰('23.末) 연장 및 신용 보증 한도 및 규모 확대* 등 인센티브 강화
 - * (보증한도) 0.7→1.0조원 / (보증규모) ('22.7~'23.6)2.3 → ('23.7~'24.6)3.0조원 목표
- **(가업승계)** 증여세 **연부연납** 기간 연장(5년→20년), 특례 저율과세(10%) 구간 상향(60억원→300억원) 등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 추진
 - <u>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사후관리기간(5년)</u> 동안 업종변경 허용범위를 '중분류'→ '대분류' 내로 확대

④ 벤처활성화 3법 추진 및 제도 개선 등으로 벤처투자 활력 제고

- (벤처3법) <u>벤처업계 지원을 위해「벤처활성화 3법」개정 추진</u>
 - 민간 벤처 모펀드 세제혜택*을 통한 1호 펀드 조성 추진 (「조세특례제한법」 개정)
 - * 민간 벤처 모펀드 출자액의 60% 또는 실투자액 중 큰 금액 x 5% + 투자증가분 x 3%에 법인세 세액공제
 - 일반지주회사의 창업기획자보유 허용 추진(「공정거래법」 개정)
 - * (現) CVC 허용 대상으로 창투사, 신기사만 명시 → (改) 창업기획자도 포함
 - 일반지주회사의 CVC 외부출자 요건* **완화 추진**(「공정거래법」개정)
 - * (現) 외부출자는 개별펀드의 40% 이내로 제한

- (자금지원 효율화) 모태펀드 총출자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, 기존재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노력을 강화*
 - * ¹이존 펀드의 회수 촉진 및 재출자 유도를 위한 세컨더리 펀드 조성 확대, ²의견 수렴 등을 거쳐 장기투자 필요업종(예:바이오) 펀드는 존속기간 연장(예:10년 이상) 검토
 - 기업 자금수요를 고려해 **팁스 R&D 사업의 사업집행 방식 개선***
 - * (現) 팁스 선정일이 빠른 일부 기업에게 연초 지급 필요액 전부를 지급 (改) 연초 모든 대상기업에게 최소 1달치 필요액이라도 우선 지급
- (우수인재 확보) 비상장 벤처기업의 외부전문가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 범위를 확대하고^{1」}, 성과조건부 주식제도^{2」}특례 도입
 - 1」(現) 변호사 등 전문직종 한정 → (改) 벤처 분야 경력자, 박사학위 등
 - 2」성과달성시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할 권리를 부여하는 스톡옵션과 달리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하여 고성과자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제공
- (글로벌 협력) 국내 창업·벤처 생태계의 글로벌화 등을 위한 「스타트업 코리아 대책」을 마련·추진('23.7)
 - <u>한국인이 해외에서 창업한 기업도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¹</u> 하고, 해외 인재유입을 위한 **창업·취업비자 제도 개선²**
 - 1 국내 법인과의 지배-종속관계, 국내 고용・부가가치 창출 여부 등 고려
 - 2」(예) 창업비자 연장시 매출액 外에도 투자유치금액, 특허실적 등 종합 고려
- (인수합병) M&A 활성화 지원 및 투자 애로 해소 지속
 - M&A 활성화를 위한 **금융·컨설팅 지원**^{1」} 등을 지속하고, <u>M&A</u> 기업과 주주간 이익 균형 등을 위한 **상법개정안** 마련^{2」}
 - 1」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 1.8조원 규모 M&A 전용 유동성지원 프로그램 운용, Cross-Border M&A 전담부서 및 해외데스크(홍콩) 운영(산은) 등
 - 2」(예) M&A기업-주주간 법률관계 합리화, 주주보호 위한 주식매수청구권 확대 등
 - 중소·벤처기업 전용 M&A 플랫폼을 구축하고, <u>벤처투자 회수</u> 촉진을 위한 중소·벤처기업 M&A 활성화 방안* 마련
 - * 민간 M&A 중개·자문 서비스에 대한 중소·벤처기업 접근성 제고 등

3 지역경제 활력 제고

◇ [●]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, ^❷기회발전특구 지원, ^❸산단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3종 세트 추진

①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 기반 마련

- **(추진체계)** <u>범부처TF(가청지역 인프라 확충 지원단)*를 **신설**하여 지역의</u> 주요 공공·민간 프로젝트 진척도 점검·관리 및 애로해소 추진
 - * (공동팀장) 기재부 1차관 및 국토부 1차관 산업·환경·해수부, 금융위 등 유관부처 및 민간 참여
 - 'PF 조정위원회(국토부)' 기능 확대·운영 등으로 신속 투자 지원
- (여건조성)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도 등을 재정비하고 인센티브 강화
 - (재정)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설비투자·토지매입 보조율 상향*
 - * 대·중견·중소기업 설비투자 보조율 +1%p, 중견기업 토지매입 보조율 +5%p
 - (금융) 지자체·민간 주도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풍부한 자본을 활용하는 새로운 지역활성화 투자방식 마련(23.8)
 - (개발부담금) <u>비수도권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기준*을 한시</u> (~'24.末) **상향**('23.8 시행령 개정)하여 개발부담 완화
 - * (도시지역) [광역시]660→1,000m² [여타지역]990→1,500m² (비도시지역)1,650→2,500m²
 - (세제) <u>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(최대 20%) 일몰</u>
 연장 추진('23.末→'26.末)
- (애로해소) 공사비 증가·분쟁 등 사업추진 과정의 어려움 해소
 - (공공) 표준시장단가 관리체계를 개편해 적정공사비 산정을 지원¹」하고, 자재비 급등으로 공기 지연시 지체상금 면제²
 - 1」 현장가격 조사 확대 및 개정 주기 단축으로 하반기중 개선된 단가 발표
 - 2」 지체상금 면제요건에 '자재비 급등으로 자재 수급 등이 곤란한 경우' 명시
 - (민자) 공사비 상승 등을 감안한 **총사업비 변경요건 구체화** 및 자금애로 완화 등을 포함한 **민자사업 애로해소 방안 마련**('23.3/4)

- (주택정비) <u>부동산원 컨설팅을 통해 계약전 공사비 분쟁을 예방</u> 하고 **분쟁 발생시 신속한 해결**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^{*}
- * 지자체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대상에 공사비 분쟁도 포함, 공사비 검증결과는 조합총회에서 논의·의결토록 규정하여 검증 실효성 강화

② 기회발전특구를 지역발전의 새로운 돌파구로 적극 활용

- (특구지정)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근거 규정 및 <u>시·도의</u> 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**가이드라인** 등 마련
- **(투자유도)** 기회발전특구 투자에 대한 **파격적 인센티브 제공**
 - (재정) <u>균특회계 자율계정을 확대하여 특구내 인프라 확충</u> 등을 지원하고, 기업투자에 대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확대*
 - * (現) 투자금액의 3~50% 지원 → (改) 기회발전특구 이전시 +5%p 확대
 - (개발부담금) <u>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100% 감면</u>
 - (세제) 기회발전특구 이전·창업 기업의 국세·지방세 부담 완화
 - * 특구 이전·창업시 부동산 취득세 감면 및 양도세 과세특례 부여,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·법인세 감면, 재산세·지방소득세 혜택 부여
 - (금융) <u>기회발전특구펀드* 조성 및 저리융자 상품개발 등을</u> 추진하고 일정기간 이상 투자시 이자·배당소득 세제혜택 제공
 - * (예) 민간자본을 재원으로 조성금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특구 입주기업·인프라 등에 투자
 - (규제) <u>규제특례 3종 세트(신속확인·실증특례·임시허가)를 적용하고,</u>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하는 규제특례 제도* 도입 검토
 - * (예) 지방정부가 신청시 '지방시대위원회' 심의를 거쳐 해당규제 적용 배제
- (정주여건 개선) <u>초·중·고 설립 지원, 주택 특별공급* 및 양도세 등</u> 세제혜택 등으로 특구내 정주여건 개선
 - * 기회발전특구 내 근로자들에게 산업부장관 등이 정한 기준에 따라 특별공급

③ 시대흐름에 맞게 지역산단 체계 및 지원방식 개편

- (입주업종 확대) 표준산업분류에 명시되지 않은 新산업도 산업 단지에 신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*
 - * 신속·명확한 업종유형 판단이 가능하도록 화학, 생명과학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업종판단 심의기구 설치·운영(산단공 등을 통해 기업 애로 상시 접수)
 - <u>산업시설용지 입주 업종을 제조업과 연계·융합하여 고도화가</u> 가능한 서비스업(예: 법률·회계·금융, 자동차 정비업 등)까지 확대
 - <u>산단 조성 완료 후에도 원활한 입주업종 변경·확대가 가능</u> <u>하도록 주기적 재검토 규정 신설</u>
- (용복합 촉진) 일부 금지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「업종특례지구」활성화
 - * [●]업종특례지구 지정대상에 복합구역 추가, [●]신기술사업금융업,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을 금지업종에서 제외, ^⑥토지소유자 동의요건(3/4이상→2/3이상), 최소 면적기준(국가산단 15만m² 이상 → 10만m² 이상) 등 신청요건 완화
- (민간자본 활용) 산단 내 입주기업이 공장 등 자산을 자금조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산단의 매매·임대 제도 개편 검토
- (정주여건 개선) 산단 내 문화·편의시설 등 기초 인프라 확충
 - 편의시설이 포함되는 복합용지 도입 절차를 간소화*하고, 해외사례 분석 등을 통한 **문화·편의 기능 개선** 추진
 - * (現) 복합용지 신설시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필요 → (改) 소규모 복합용지 (산업시설과 편의점 등 지원시설 집적)는 개발계획 변경 없이 신설 가능
 - <u>노후 산단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투자 의무 완화를 검토</u> 하고 재투자금을 사업대상지에 활용

4 내수 활성화

◇ 상반기 내수회복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릴레이 소비 활성화 이벤트 개최,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등 추진

□ 대규모 소비행사 개최 및 연계 할인행사로 내수활성화 여건 조성

- (동행축제) 9월중 중소기업 제품 등 소비촉진 행사인 동행축제를 개최
 - 대형마트·백화점 등과 연계한 대규모 할인 병행 추진
- (코세페) 11월 코리아 세일페스타 행사기간을 연장(15→20일)하여 역대 최대 규모로 운영하고 행사혜택 확대
 - <u>코세페 기간중 우체국 쇼핑 할인쿠폰 발급, EMS 배송료 할인,</u> 전통시장 주변 **주차 단속 한시 유예** 등 추진

② 해외관광 수요의 국내 지역관광 전환을 위한 정책지원 강화

- (국내관광 지원) 관광비용 지원 강화 및 여행상품 다양화
 - <u>야간관광 특화도시</u> 숙박과 연계한 KTX·SRT <u>할인¹ 을 제공하고('23.11),</u> 특화도시 경유 <u>철도상품 및 도시 순환 셔틀버스 확대² 운영</u>
 - 1」 이긴관광 특화도시(부산 인천 대전 전주, 강릉 통영 진주) 숙박KTX 묶음 예마시 최대 30% 할인 SRT 사전예매(출발 2일전)시 경부·호남선 야간 특정 열차 대상 30~50% 할인
 - 2」(철도상품) 대전, (야간 프로그램 장소 연계 셔틀버스 운행) 부산, 인천, 대전, 전주
 - 여행비수기인 11월경 숙박(3만원) 쿠폰 약 30만장 지원
 - 지역 명예주민으로서 각종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**디지털 관광 주민증**(한국관광공사)의 **대상지역을 확대**하고 **혜택 강화**
 - * (대상지역) 평창·옥천 등 → 최대 15개 지역까지 확대 (혜택강화) 연계 할인 프로그램 확충 및 사전예약보다 현장할인 중심 운영
 - <u>매월 마지막 주「여행이 있는 주말」에 저렴하게 이용 가능한</u> 단기 지역 여행프로그램(1박2일, 당일치기 기차여행 등) 운영('23.8~)
 - * '대한민국 구석구석' 여행이 있는 주말 특집 페이지 운영 예정(한국관광공사)

- (관광수요 확충) 규제완화, 맞춤형 상품 개발 등 추진
 - <u>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내국인 공유숙박 허용 지역을</u> 확대*하고 업계 등 의견 수렴을 거쳐 **연내 제도화 방안 마련**
 - * (現) 서울 → (改) 서울 + 부산(국제관광거점도시) 등
 - 반려동물 동반 관광수요에 대한 **맞춤형 관광상품*** 출시
 - * 반려견 놀이터 이용객에게 지역소비 상품권 제공 이벤트(댕댕쇼핑왕, '23.7~) 운영, 국내 최대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인 '경기 반려마루 여주' 개관('23.7) 등

③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및 편의제공 강화

- (방한 촉진) 외국인 관광객의 <u>한국 재방문 유도를 위한 항공권</u> 중정 행사*(약 700장, '23.7~8) 등 방한 촉진 프로그램 확충
 - * 일본·대만·중국 등 관광객 대상으로 무료 왕복항공권 증정 온·오프라인 행사 진행
 - 인천공항 환승객 대상으로 <u>72시간 이내 K-스탑오버 관광상품¹」을</u> 출시하고, 경복궁·창덕궁 **야간관람 외국어 해설** 재개·확대²」
 - 1」 강원(고성·춘천)/경북(안동)/경북(경주)/청주(청남대) 등 지방과 연계한 관광프로그램
 - 2」 경복궁 별빛야행: ('23.上)0회→(下)2회 / 창덕궁 달빛기행: ('23.上)6회→(下)24회
 - 영종도 복합리조트 조기 개장 지원* 등을 통해 환승객, 고급 관광객 등 다양한 방한수요를 유인
 - * 호텔등급·카지노업 허가 등 심사요건 묶음 심사 등을 통해 '23.末경 개장 추진
 - **K-로드쇼**(뉴욕, LA 등)를 통해 **한국방문**을 **적극 홍보**하고, **K-Pop·K-푸드 이벤트** 등*을 연이어 **개최**하여 방한 유도
 - * 잼버리 K-pop 콘서트('23.8), INK 콘서트('23.9), 한돈데이 행사('23.10), 우리술 대축제('23.11)
- (편의 제고) 주요 교통 플랫폼 중심으로 여행 서비스 개선
 - <u>외국인이 해외 호출앱·관광앱 등을 활용해 국내택시 호출이</u> 가능하도록 하고^{1」}, 해외카드를 통한 <u>결제 편의 제고^{2」}</u>
 - 1」해외-국내 호출업계간 제휴를 통해 앱 간 자동연계 등 추진
 - 2」(現) 자동결제는 국내카드만 가능 → (改) 자동결제 카드에 해외카드 포함
 - 철도·고속버스 등에 대해 해외에서도 예약하고 해외카드를 통해서도 결제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추진
 - * (SRT) 해외예약 및 해외카드 결제 서비스(영문웹) 개시('23.6.末) (고속버스) 글로벌 여행플랫폼과 연계한 예약·결제서비스 제공('23.3/4)

2. 민생경제 안정

1 물가·생계비 부담 경감

◇ 하반기 물가 상승요인 억제 및 공급측 불안요인 관리를 지속하고, 핵심생계비 부담 경감을 통해 서민·취약계층 등 생활안정 지원

□ 물가 안정기조 안착을 위한 주요품목 가격안정 노력 지속

- (에너지) <u>CNG 연동보조금 신설 및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</u> 재시행('23.7~8)을 추진하고 세제지원 등 지속
 - 휘발유·경유·LPG부탄 유류세 인하 연장(~'23.8) 및 발전연료 (유연탄·LNG) 개별소비세 감면(△15%) 연장(~'23.12)
- (공공요금)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원가부담 등 인상요인을 자체흡수·최소화하여 하반기중 최대한 인상 자제
 - 인상 불가피할 경우 시기 분산·이연 등으로 국민부담 최소화
 - * (예) 지자체별 도시가스(소매공급분) 요금 인상시기를 금년 이후로 최대한 조정 협의
 - 균특회계·특별교부세 차등 배분*을 통해 지방요금 인상자제 유도
 - * 지자체별 상반기 동결 실적, 하반기 계획 등을 반영
- (식품·외식) 원가부담 경감 등으로 가격인상 압력 완화
 - 영세 개인음식점(연매출 4억원 이하)에 대한 **농산물 의제매입** 세액공제 공제율 확대*조치 일몰 연장 추진
 - * 공제율 확대(8/108 → 9/109) 혜택을 '23.末까지 한시 적용중
 - <u>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¹」 및 외식업체육성자금²」 지속 지원('24년)</u>
 - 1」 물가안정 참여 개인서비스업체 지원: ('23.5) 6,142 → ('24년 목표) 7,000개소
 - 2」운영자금(국산식재료 구매)·시설자금(음식점 개설·보수), 고정금리(2~3%) 대출
 - <u>중기·소상공인</u> 등 대상 수도요금 감면 지원 추진('23년 한시)
 - *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지자체가 수자원공사에 납부하는 광역상수도 요금 감면

- <u>수입 원부자재 등 **수입가격 공개 확대*** 및 **수입가격 급등** 품목 점검 강화 등으로 수입원가 부담 경감 유도</u>
- * 농축수산물·원유 등 80개 → 생활물가 밀접품목 관련 원부자재 등(10개 내외) 추가
- (농축수산물) 비축·계약재배* 및 <u>할당관세 확대(가격강세 및 공급</u> 부족 예상품목 등) 등 수급안정 조치 지속·강화
 - * (비축) 배추(1.7만톤, 전년비 45.3%↑), 무(0.6만톤, 200%↑), 감자(0.9만톤, 70%↑) 등 역대 최고수준 (계약재배) 여름 배추(5.5만톤), 여름 무(5만톤), 시설채소(1.5만톤), 사과(5.5만톤) 등
 - <u>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('23.11 출범) 활성화(B2B)</u>¹¹ 및 온라인 **직거래**(B2C) 확대²¹, **PB상품 활성화**³¹ 등 유통구조 개선 노력 지속
 - 1」기존 거래주체(도매법인, 중도매인) 外 산지 APC, 중소형마트 등 유통주체 추가, 온라인 플랫폼 이용수수료 면제(3년), 견본 송부에 필요한 택배비 지원 등
 - 2」 온라인 직거래 참여 농어민대상 영상장비 및 시설지원 등
 - 3」 유통산업의 디지털 전환, 해외진출지원 및 상생기반 조성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「제6차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('24~'28)」 수립
 - 국제 공급망 불안에 취약한 감자* 등의 수입국 다변화 추진
 - * 미국(신규 11개주), 이집트, 페루, 인도 등 기존 금지국(주)에 대해 수입 허용 추진

② 에너지·의료·교육·교통 등 핵심 생계비 부담 경감

- (에너지) 전기·가스 요금「에너지 캐시백」지원을 지속 확대
 - ▶ **(전기요금)** (現) 절감량 x 30원/kWh → (改) 절감률에 따라 30~100원/kWh (現) 반기별 환급 → (改) 월별 환급
 - ▶ (가스요금) (現) 시범사업 당시('22.12~'23.3) 7% 이상 절감시 30~70원/m³ (改) <u>3~5% 이상 절감시 혜택 + 환급금액 상향('23.10 세부계획 확정</u>)
- (의료) 국민부담, 건보 재정여건, 타 사회보험 부담률 등을 감안
 하여 '24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최소화 검토('23.8, 건정심 결정)
 -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인하(△5% 내외) 추진
 ('23.12, 건정심 결정)

- (교통) '23.7월부터 알뜰교통카드플러스 사업을 확대 시행*하고 하반기중 서민교통비 절감을 위한 추가 방안 마련('23.8)
 - * 알뜰교통카드 최대 이용횟수 월 44회→월 60회로 상향(적립마일리지 최대금액 상향)
 - 버스·지하철·기차 등 **대중교통 이용**에 대한 **신용카드 소득공제** 확대(40→80%, ~'23.末)
- **(통신) 제도개선, 요금경쟁 활성화**로 통신비 부담 경감
 - 유통망 **추가지원금 한도 확대**(공시지원금의 15→30%, 단통법 개정)
 - <u>알뜰폰 관련 도매제공 의무제 개선¹</u>, 저렴한 알뜰폰 <u>5G</u> 중간구간 요금제 출시² (*23.7)
 - 1」통신사의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도매제공의무제도 일몰 연장,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사에게 데이터를 대량 先구매할 경우 적용되는 할인 폭·방식 확대 등
 - 2」(現) 10G 이하, 110G 이상 요금제만 제공 (改) 5G 중간구간 요금제 3종(54/74/99GB)까지 도매제공 확대 등
 - <u>개인별 이용패턴을 바탕으로 요금제를 추천하는 등 통신</u> 서비스·요금에 대한 **통신사** 등의 **정보제공 활성화** 방안 마련
- (교육) 공정 수능·입시체제 구축, 사교육 카르텔 대응 등 사교육 경감대책* 집중 추진 및 학자금 등 부담 경감방안 마련
 - * ●공교육 과정내 수능 출제, ❷사교육 카르텔 근절, ❸공교육 교과보충 강화 등
 - <u>'23년 2학기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 동결(1.7%)</u> 및 저소득층을 위한「대학생 패키지^{*}」지원 방안 마련
 - * 국공립대 등록금 수준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,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 확대 등
 - <u>시·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중·고등학생 교복·생활복 구입</u> 부담을 경감하고 **현장체험학습비** 지원 확대 추진
- (금융) 취약계층을 위한 저금리 자금 공급 지속·확대
 - <u>정책서민금융</u> 연간공급 규모를 **1조원** 이상 확대하고 온라인 채널* 확대를 통해 접근성 강화
 - * (現) 상호금융권중 신협만 온라인 근로자 햇살론 취급 \rightarrow (改) 새마을금고, 수협 등 추가
 - 금융권 기여 등을 통한 소액생계비 대출^{*}을 연말까지 차질없이 공급
 - * '23년 소액생계비 대출 계획(억원):(당초)1,000 → (旣 확대)1,500

◇ 역전세·전세사기 등 서민 주거안정 저해 요인 방지에 주력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 노력 지속

① 역전세, 전세사기 등 임대차 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

- (대출규제 완화) 세입자 보호조치를 전제로 <u>7월 말부터 1년 한시적</u> 으로 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대출규제 완화
 - (임대사업자) RTI(임대소득/이자비용) 하향(1.25~1.5배<규제지역>→1.00배)
 - (개인) DSR 40% 대신 DTI 60% 적용(특례보금자리론 반환대출 수준)
 - ※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규제 완화 주요 내용
 - ▶ (지원대상) 보증금 반환기일 도래 + 역전세 상황(신규 전세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후속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)에 처한 집주인
 - * (집주인) 개인·임대사업자 (주택형태) 아파트, 연립·다세대,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
 - ▶ (대출금액) 보증금 차액 내 지원이 원칙, 다만 후속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 특약^{*} 전제로 대출한도내 전세보증금 대출
 - * 후속세입자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 우선상환
 - ▶ (대출관리) 후속 세입자 보호¹」 전제下 대출, 전세금 반환목적 外 사용 금지²」 1」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 부담 의무화 2」 반환대출 금액은 은행이 세입자 계좌로 지급
- (의무보증) 임대사업자 의무보증 가입요건을 개선*하되, 기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 추진('23.7)
 - * 전세가율, 주택가격 산정방법 등을 전세보증과 유사하게 개선
- (금융지원)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(6.1일 시행) 등을 통해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
 - ▶ (대환대출)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HF·SGI 보증 전세대출을 저금리 기금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5대 은행 시스템 가동('23.7)
 - ▶ (연체정보) 피해자가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연체정보 등록유예
 - ▶ (무이자대출) 경공매 시점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최우선변제금 한도(서울 기준 5,500만원)내 무이자대출 지원

- (책임중개)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중개시 매물·임대인 정보를 (납세이력 등) 의무적으로 확인·설명하도록 제도개선 추진
- (임대차 3법) 중장기적으로는 임대차 신고제, 계약갱신요구권, 전월세 상한제 등 제도 합리화 방향 검토

② 주거비 부담 완화 및 무주택자·청년 등 대상 주거지원 확대

- **(부담완화)** <u>가격급등 이전('20년)</u> 수준으로 부동산 세부담 환원을 위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수준(60%)으로 유지
 - *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대비 추가 인하 기발표(45→43~45%, 1주택 기준)
 - <u>소상공인에게 **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**에 대한 **세제지원*** 일몰 연장('23.末→'24.末)</u>
 - * 인하액의 최대 70%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공제
 -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**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**
 - * (예) 상환기간 15년 이상 차입금(고정금리·비거치식) 이자상환액 공제한도 1,800→2,000만원 상향
- (청년 등 지원) 청년·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
 - <u>디딤돌·버팀목 대출 등 **주택 구입·전세자금 23조원 추가 공급** (*23년: 21→44조원)</u>
 - * 청약저축 및 주택도시기금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병행
 - <u>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 연간 납입한도¹」상향(240→300만원)</u> 및 <u>청년 우대형 상품²」에 대한 세제혜택 지속 제공</u>
 - 1」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납입액 40% 소득공제
 - 2」 무주택 청년 대상 우대금리(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최대 $\triangle 1.5\%$ p) 및 이자소득 비과세
 - <u>청년층 대상으로 전세금 반환보증료를 30만원까지 전액 지원*('23.7~)</u>
 - *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, 연소득 5천(신혼 7천만원) 이하,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기존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던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
 - <u>청년층 대상 장기 주담대 상품 출시 확대 및 청년층의 미래</u> 소득(상환능력)을 고려한 체증식 분할상환 방식 도입 유도
 -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·전세 자금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*
 - * (現) 일반: 연 ^(전세)5천만원, ^(구입)6천만원 / 신혼: 연 ^(전세)6천만원, ^(구입)7천만원 (改) [上同] 신혼: 연 ^(전세)7.5천만원, ^(구입)8.5천만원

③ 임대주택·신규택지 공급·분양 확대 등 공급기반 확충

- (임대공급) 세제혜택 및 민관협력 등으로 공급 활성화 뒷받침
 - <u>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토지·건물 소유자가</u> 다르더라도 **부속토지 종부세를 합산배제***하여 비용 절감
 - * ¹(공공임대주택) 토지소유자 무관히 종부세 합산배제 (민간임대주택)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리츠(공공주택사업자 출자)가 토지 소유시 합산배제

< 건물-토지 소유형태에 따른 종부세 부과방식>

구 분	현행	변경
건물·부속토지 소유자 동일	<u>종부세 합산배제</u>	<u>종부세 합산배제</u>
건물·부속토지 소유자 상이	<u>종부세 합산배제 미적용</u>	●공공임대(토지소유자 무관), ●민간임대(공공주택사업자 토지소유시) <u>종부세 합산배제</u>

- <u>민관 협력하에 서울시 상생주택(민간 소유 토지 임대 + 서울시 임대주택 건설) 등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모델 확산 지원*</u>
- *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 대상 부속토지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을 통해 상생주택(주변 전세시세 80% 수준으로 무주택자가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) 확산 지원
- 공공임대주택을 **연내 10.7만호 공급**하고 <u>하반기중 공공임대</u> 약 3.8만호 입주자모집·입주 등 실시
- * 전국 공공임대 입주자모집 규모(만호): [서울] 0.8(전세 0.6, 매입 0.2), [수도권] 1.4(전세 0.5, 매입 0.4 건설 0.5), [지방] 1.6(전세 0.5, 매입 0.7, 건설 0.4)
- (신규택지) 토지보상 완료된 3기 신도시는 3/4분기중 착공하고 택지지구 지정 및 신규 후보지 발표 등을 가속화
 - <u>화성진안 등 기발표 택지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^{1」} 등을</u> 추진하고, '24년 상반기까지 신규 공공택지 15만호^{2」} 발표
 - 1」 공공주택지구 지정(만호): 화성진안(2.9), 과천갈현(0.1), 시흥정왕(0.1), 인천구월2(1.8), 광주산정(1.3), 과천<지구계획 승인>(1.0)
 - 2」 8.5만호 旣 발표 : (김포한강2) 4.6만호<'22.11>, (평택지제·진주) 3.9만호<'23.6>

- (정비사업) 노후 주택·도시 재건축, 재개발 등을 통해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·제도개선 추진
 - 「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및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를 위한 재초환법 개정안 조속 입법 추진
 - 정비사업 시행·운영에 대해 신탁사 특례^{*}를 허용하여 정비 사업 소요기간을 기존 조합방식 대비 2~3년 이상 단축 유도
 - * 신탁사의 정비구역 지정 제안 및 정비계획 및 사업계획 동시 수립 허용

조합 방식	기본계획 수립	안전진단	구역지정, 정비계획	추진위원회 설립	조합설립	사업시행 인가	관리처분 계획	착공분양	입주
신탁	기본계획		신탁사 특례			관리처분			
방식	수립	안전진단		<u> </u>		업계획	계획	착공분양	입주
0 7			동시	시성	통합	수딥	"""		

- <u>지자체의 정비사업 기부채납 기준을 명확화^{1」}하고 기부채납</u> 규모에 맞는 **인센티브**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 합리화^{2」}
- 1」(現) 별도 규정 無 → (改) 사업 무관 기부채납 금지, 기부채납 인정범위 명확화 등 2」용적률·건폐율 등 완화, 인센티브 제공 어려운 경우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검토 등
- <u>공공 참여형 소규모 정비사업 후보지 공모(국토부·LH합동)를</u> 추진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* 병행
- * 小재건축 연접구역 통합, 재해취약지역 사업유도 등 소규모정비법령 및 빈집 업무 지침 개정
- (분양) 법령개정, 사전청약 확대 등을 통해 신속한 분양 뒷받침
 -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('23.4, 개정)에 이어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조속히 추진(주택법 개정)
 - 청년·무주택자를 위해 3기 신도시 등 우수 입지에 **연내공공** 분양주택 7.6만호 인허가를 추진하고 <u>사전청약 확대</u>*
 - * 당초 계획(2회, 7천호)를 확대하여 연내 수도권에 3회 1만호 청약 추진

	6월	9월	12월
시세 70% 수준(나눔형)	남양주왕숙 932호 안양매곡 204호 고덕강일3단지 590호	하남교산 452호 안산장상 439호 마곡 10-2 260호	남양주왕숙2 836호, 마곡 택시 차고지 210호, 한강이남 300호 위례A1-14 260호, 고양창릉 400호 수원당수2 403호
시세 80%	동작구 수방사 255호	구리갈매역세권 365호	대방동 군부지 836호
수준(일반형)		인천계양 618호	안양관양 276호
현재 시세와	-	구리갈매역세권 300호	부천대장 400호
6년후시세 평균		군포대야미 340호	고양창릉 600호
(선택형)		화성동탄2 500호	남양주진접2 300호

◇ 현장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로 고용안정 도모

① 노동시장의 수요-공급간 괴리 완화를 위한 지원체계 보강

- (미스매치 해소) 빈일자리 해소 및 진로·구직 지원체계 확충
 - 제2차 빈일자리 대책을 마련하여 지원 업종을 확대(6→10개)*하고 근로여건 개선 및 인력매칭 등 적극 지원
 - * (기존) 제조업(조선+뿌리산업), 물류운송, 농업, 음식점업, 해외건설업, 보건복지업 (추가) 건설업, 수산업, 해운업, 자원순환업
 - <u>직업계고·일반계고 비진학 청년 및 대학 재학생 대상으로</u> 맞춤형 **진로교육** 및 고용서비스 지원('24)
 - * 진로정보 탐색, 희망직업 포트폴리오 설계, 일경험·직업훈련 지원 강화 등
 - 9개로 분산된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고용서비스 플랫폼(가청고용24) 개시(*23.11, 시범가동)
 - * [•]워크넷취업지원, [•]·고용보험(실업급여, 고용장려금 등), [•]아HRD-NET(직업훈련), [•]·취업이룸(국민취업지원), [•]· • EPS(외국인고용), [•]·청년일자리, [•]·청년내일채움공제, [•]·기업탐방형 일경험, [•]·청년도전지원
- (직업훈련 강화) 직업훈련 지원을 현장·수요자 중심으로 개선
 - <u>직업훈련 고도화를 위한 「제4차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('23~'27)」수립</u>
 - * 바이오·반도체 등 신기술 분야 훈련 프로그램 확대, 대·중소기업 상생훈련 활성화, 직무능력은행제 등 생애경력관리 강화, 민간기관 서비스 활성화 등
 - <u>연령대별 수요(노동시장 진입시기(청년)</u>, 전직기 등)를 고려하여 훈련비 전액을 지원하는 **국민내일배움카드 특화훈련* 확충**
 - * 국가기간·전략산업직종 훈련, 산업구조변화대응 훈련, K-디지털 트레이닝 등
 - <u>훈련기관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내실화¹」하고 우수 직업훈련</u> 기관·과정에 대한 <u>인센티브 강화²」방안 마련</u>
 - 1」 훈련과정 맞춤형 조사지 다양화(5→16종), 장기훈련(350H 이상) 중간조사 도입 등
 - 2」(예) 베스트 직업훈련기관, 국가기간·전략산업훈련 우수과정 등 훈련비 우대지원 등

② 청년·여성·고령층 등 고용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강화

- (청년) 일경험 기회 확대^{1」} 및 단기복무 군간부를 내일배움카드 발급
 대상에 추가^{2」}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中企・공공기관 등 취업지원 강화
 - 1 급년 8만명+α 목표로 지원하고 '24년에도 규모 확대 추진
 - 2」(現) 전역예정 중장기복무(5년이상)자만 허용 → (改) 전역예정 단기복무 간부에도 허용
 - (중소기업) 중기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일몰('23.末) 연장·대상 확대^{1」} 추진 및 인센티브^{2」}확대
 - 1」(現)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운전학원,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적용 중
 - 2」(재정) 중소기업 대상 기업환경 및 조직문화 개선 사업 신규 추진 (정보) 워크넷 서비스에 구인기업 제시임금, 구직자 희망임금 등 정보 제공
 - (공공기관)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 연장을 추진하고("23.末→25.末)
 어학시험 기간연장 대상 확대^{*} 등 취업준비 부담 완화
 - * (現) 토익 등 22종 어학시험 최대 5년간 공인성적 인정 \rightarrow (改) 한국어능력시험 등 추가
 - (벤처기업) 스타트업 대상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참여기회를 확대하고¹, 비수도권 청년을 위한 **창업지원** 강화²,
 - 1」 매출액 기준 미충족 하더라도 전문가 협의회(고용센터)를 통해 필요성 인정시 지원
 - 2」 청년창업펀드 운용사 선정시 비수도권 투자 30%이상 약정 운용사 우대('24), 창업중심대학의 창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일반 지역청년에게도 개방
 - (해외) 정상외교 성과* 등을 기반으로 **청년 해외 인턴십** 및 교류 확대, 해외취업 지원 등 추진
 - * (예) 한-미 청년교류 특별 이니셔티브, 한-일 청소년유학생 등 청년 교류 확대 등을 기반으로 첨단산업 등 국가별 전략 협력분야에 대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구성
- (중장년) 고용복지⁺센터내 경력단절여성 등 중장년 전담창구를 설치·운영하고, 맞춤형 재취업지원 패키지^{*} 제공
 - *「심층상담→재도약·전직지원프로그램→취업지원」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
- (고령층) 지자체의 고령자 취업지원 근거 신설 등을 담은 고령자 고용법 개정 및「신노년 평생교육 지원방안」마련
- (자영업자·특고) 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을 영세 자영업자,
 특수형태 근로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

4 약자복지·취약계층 지원

◇ 건전재정 기조 下 내년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고, 복지시스템 선진화 노력 지속

① 저소득층·노인·장애인·취약아동 등 맞춤형 지원 확충

- (저소득층) 생계급여 선정기준 단계적 상향 등 보장성 강화를 지속하고, 반지하 자가가구 침수방지시설* 설치비 전액 지원(*23.下)
 - * [●]차수판·역류방지장치, ^②개폐가능한 방범용 방충망, ^③침수경보장치 추가 지원
- (노인) 의료-요양-돌봄 통합판정체계 도입^{1」} 및 돌봄 전문인력 전문성 강화^{2」} 등을 통해 지원 사각지대 해소
 - 1」의료·요양·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필요한 서비스로 연계
 - 2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의무화, 양성 교육과정 확대, 승급제 도입 등 추진
- (장애인) 「장애인 개인예산제^{1」}」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선택권을 확대하고,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강화^{2」}
 - 1」(現) 활동지원급여는 활동지원·방문간호·방문목욕 서비스에 사용 (改) 활동지원급여 일부를 긴급돌봄, 언어·물리치료, 보조기기 구매 등에도 사용 가능
 - 2」국가, 공공기관 등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확대(1→2%)
- (아동) 출생 미신고 아동 관리 강화* 등을 추진하고, 어린이집
 0세반 개설 지원 및 단계적 보육료 인상 등 추진('24)
 - *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을 전수조사해 출생신고 여부 및 소재·안전 확인

② 청년들의 삶의 질 개선과 취약청년의 사회활동 지원 추진

- (자산형성)
 청년도약계좌 요건 명확화¹」 및 목돈활용을 위한

 他금융상품과 연계 등을 추진하고, 청년저축 세제혜택 지속 제공²」
 - 1 , 기입시 비교세 기준소득요건: (現) 직전연도 소득 → (改) 직전연도 소득 미확정시 전전연도 소득 적용
 - 2」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일몰('23.末) 연장, 청년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기간(~'23.末) 연장
- (자립지원) 취약청년 심리상담센터 본인부담금 완화 등 지원 강화
 - * (現) 본인부담금 10% (단, 자립준비청년,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)
 - 자립 준비청년^{1」}, 니트청년^{2」} 전담 지원체계 구축
 - 1 L 시·도 자립지원전담기관 내 인력 확충하고 고용센터·LH 등과 연계 강화
 - 2」 심리상담 프로그램 마련, 청년도전지원 사업 대상을 니트 위험군까지 확대 등
 - ※ <u>주거·교육·고용·자산형성·자립 등 분야별 청년 지원방안 집중 추진</u>

③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 및 자생적 경쟁력 확충 지원

- (경영애로 해소) 소상공인 부채부담 경감 및 매출기반 확대
 - (부채경감) 기존 코로나 피해 차주만을 지원하던 새출발기금의 요건을 완화하여 영세 소상공인·자영업자 재기지원 확대 추진
 - * (예) 영세 소상공인·자영업자는 코로나 직접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포함
 - (세제지원) <u>영세 자영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는 금액에</u> 대한 **부가세 공제 특례**(1.3%, 1,000만원 한도) **일몰**('23.末) **연장**
 - (매출확충)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(골목형상점가 요건완화 등) 및 이용자 편의 제고(상품권 앱 내 점포 위치안내, 할인기능 추가) 추진
- (경쟁력 확충) K-관광마켓(전통시장) 10선 투어 상품을 개발하고 알리페이 등 해외결제사와 소상공인 간편 결제시스템*간 제휴 확대
 - * 제로페이 제휴: 위챗페이('20)·유니온페이('22) → 알리페이 및 알리페이⁺('23.下)
 - <u>민간 크라우드 펀딩을 개별 점포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</u>, 골목상권 단위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추진

④ 복지시스템 개선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

- (사회서비스 고도화) 규제개선, 품질관리, 경쟁여건 조성 등을
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중산층 이상으로 확대
 - *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향('23.5) 후속조치 이행
 - 일상돌봄서비스*를 도입하고('23.7) 4/4분기 중 사회서비스 관련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혁신펀드(140억원) 조성
 - * 가족돌봄청년, 돌봄 필요 중장년 등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 대응
- **(복지수요 선제발굴)** 위기정보 활용 확대 등 복지 **사각지대 발굴** 시스템 개선·고도화^{*}
 - * 공공요금체납 등 위기정보 입수 확대(44종+a), 위기정보 입수주기 단축(2→1개월) 등
- (자립지원 강화) <u>자활역량평가를 개선*하고, 민간일자리와</u> 연계된 자활사업을 확대(자활복지개발원-기업간 MOU 등)
 - *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디지털 문해력 등 현장에서 필요한 역량을 평가
 - <u>성과지표 개편 등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합리적 평가체계</u> 마련

3. 경제체질 개선

1 과학기술 · 첨단산업 육성

◇ 자율과 창의 기반의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 육성으로 미래 성장동력 발굴 지원 강화

① R&D 지원 방식 개편 및 인재양성 강화 등으로 과학기술 도약 지원

- (R&D 지원혁신) 나눠먹기식 관행을 혁파하고 31조원 규모의 R&D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
 - 우주·항공, 양자, 바이오, AI·로봇 등 미래·원천 기술 분야 투자에 집중하고 단기 성과에 연연하지 않는 과감한 투자 추진
 - * 책임 PM에 권한과 독립성을 부여해 성공 가능성에 구애받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과감한 도전을 지원하는 한계도전형 R&D 시범과제 착수('23.10)
 - 대규모 R&D 절차·제도를 개선*하여 재정지원 효과성 제고
 - * 다부처 R&D 사업의 경우 주관부처 계획 하에 투자규모 조정, 1억 이상 국가 연구시설·장비 심의기간 단축 등
- (글로벌 연대) 세계적 수준의 공동연구*를 대폭 확대하고 국가별 R&D 협력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전략 수립('23.9)
 - * (예) 국내 연구기관 미 보스턴의 연구기관과 융합 연구 및 핵심인력 양성 추진
 - 정상외교,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협상 등을 바탕으로
 미국¹」·EU²」와의 R&D·기술협력 확대 추진
 - 1」 韓-美 첨단기술 공동 R&D 등 신규 추진('23.8), 韓-美 산업기술 혁신포럼('23.9) 등
 - 2」 EU의 다자 연구혁신 지원 사업인 호라이즌 유럽('21~'27 955억 유로 지원)과 新성장 4.0, 12대 국가전략기술 등 정부의 주요 기술 육성 정책 연계
- (민간주도 R&D) <u>국방 R&D기관을 방산기업 중심에서 非방산</u> 기업까지 확대하는 등 민간 R&D 역량 활용 제고

- 컨설팅지원·영업비밀보호 강화* 등 민간 기술사업화 지원 확대
- * 산업기술 R&D 비공개 여부 결정 기준 등 마련
-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(現 500만원) 상향 및 비과세 대상 조정*
- * (예)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제외 등
- (인재양성) 첨단산업·현장 실무인재 양성, 해외인재 유치 등 추진
 - 대통령 주재「인재양성 전략회의」및 국가인재양성기본법 제정을 통해 5대 첨단 산업(A·B·C·D·E)별 인재양성방안* 지속 마련
 - * ^C반도체('22.7), ^D디지털('22.8), ^B바이오헬스('23.4), ^E환경에너지('23.5) 旣발표 → ^A모빌리티, ^C첨단부품 등 인재양성 방안 마련 추진('23.下)
 - 첨단산업 분야 재직자를 위한 산·학연계 교육과정을 활성화
 - * 기업과 대학이 협력하여, 기존 업계 종사자 대상으로 학위인정 및 야간· 파트타임 수업으로 업무병행이 가능한 교육과정 운영
 -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취업·정주여건 개선 등 추진*
 - * (예) 해외 우수인재 배우자 등의 취업범위 확대 등

② 글로벌 클러스터 구축, 금융지원(10조원+a) 등 첨단산업 육성 가속화

- (클러스터) 규제 완화·해외 우수인력 유치·제반 생태계 조성 등 「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전략」 본격 추진
 - ▶ (규 제) 건축규제 완화(건폐율·용적률 등), 입주가능업종 확대(법률·회계 등 추가)
 - ▶ (인 력) 비자 발급시 가점 부여, 비자 혜택 강화(기간 확대, 가족취업제한 완화 등)
 - ▶ (생태계) 산·학·연 협력 지원(공동 R&D 프로그램 신설·확대),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
 - ▶(금 융) 클러스터별 특화펀드 조성 등
 - <u>15개 국가첨단산업벨트 적기 조성을 위해 사업 타당성 확보</u> 지역부터 **금년 내 예타신청**을 추진('23.4/4~)하고 **신속 처리**
 - 신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7월 중 지정하고 인허가 타임아웃제* 시행('23.7) 등을 통해 신속조성 지원
 - * 특별한 사유 없이 최대 60일 內 인허가 미처리시 인허가를 처리한 것으로 간주

- 첨단기술 분야 **글로벌 혁신 특구**를 지정(2개)하고, 국내 최초로 전면적 **네거티브 규제** 시행("23.4/4)
- (세제·금융) 반도체·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*와 함께, 10조원+α 금융 지원을 통해 첨단산업 투자 뒷받침
 - *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 확대(대·중견기업 8→15%, 중소기업 16→25%)
 - ▶ (한국투자공사) 해외 첨단산업 기업 인수합병시, KIC 공동투자(50억불(6.5조원))
 - * "해외기업 인수합병 등 국내기업 해외진출 공동투자 우선활용" 위탁자금(50억불) 활용
 - ▶ (공급망기금) <u>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소재·부품 등 관련 국내외 설비투자,</u> 해외기업 인수합병 등 지원(+α)
 - ▶ (업종별 펀드) 반도체 생태계펀드 조성 및 旣조성 업종별 지펀드^{*} 결성투자(0.3조원+农)
 - * (반도체)750억원, (시스템반도체)800억원, (이차전지)201억원, (미래차)300억원
 - ▶ **(혁신성장펀드)** 新성장 4.0, 국가전략산업 등에 자금공급 활성화(**3.0조원**)

③ 新성장 4.0 전략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 및 성과 확산

- (추진 가속화) 하반기 계획된 新성장 4.0 3대 분야 15대 프로젝트 주요과제를 신속히 추진
 - ▶ (新기술) K-UAM 1단계 실증(전남 고흥), 20큐비트 양자컴퓨터 시연 등
 - ▶ (新일상) 국산 AI 반도체 데이터센터 구축(K-클라우드), 부산항 신항(스마트항만) 2-5단계 준공 등
 - ▶ (新시장) 반도체 My Chip 서비스 추진, K-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단 구성 등
 - <u>4개 프로젝트는 세부 추진과제를 추가·보완하여 내실화</u>
 - ▶ (내 삶속의 다**지털)** 국내 생성형 AI 기술·산업 고도화 및 AI 윤리·신뢰성 제고, 자율운영 및 설비관리 가능 AI기반 정수장 구축, 사이버보안 기술개발 지원 강화
 - ▶ (미래형모빌리티) UAM용 주파수(5G 상용망 등) 발굴 및 공급 추진
 - ▶ (에너지 신기술) 가축분뇨 등 유기성폐자원 활용 바이오가스 생산·이용 확대, 민·관 공동 개발 차세대원자로 노형 확대
 - ▶ (스마트 농어업) 그린바이오산업 육성법 제정 등
- (성과확산) 과제보완·국민소통 강화 등으로 기대효과·추진성과 확산
 - 新성장 4.0 관련 통합정보 플랫폼 운영 및 <u>디지털 이코노미포럼</u> (<u>'23.9</u>) 행사 등 추진

2 구조개혁 가속화

◇ 우리경제의 근본적 체질개선과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노동·교육·연금 3대 구조개혁 본격 추진

① (노동개혁) 노사법치 확립 및 근로시간·임금·이중구조 개편 구체화

- (노사법치) 노조의 업무방해, 사용자의 포괄임금 오남용 등 불법·부당행위 엄정 대응 및 노조의 회계투명성 제고* 추진
 - * 결산결과 공표 시기·방법 구체화, 회계공시-세제혜택 연계 등
- (근로시간·임금) 실근로시간 축소 기조하에 현장 어려움 등을 감안한 근로시간 개편 보완방안 마련
 - * 전국민·노·사 설문조사(6,000명) 및 업종·직종·세대 등 고려한 여론조사 실시("23.4~8)
 - 상생임금위 논의를 기반으로 노동시장 약자보호 등을 위한 이중구조 개선방안('23.7) 및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 마련('23.4/4)
- **(이중구조) 다양한 고용형태 종사자**(특고 등)의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안을 마련하고 **파견제도 선진화** 등 추진
 - * 경사노위 권고안 기반으로 사회적 대화를 거쳐 개선안 마련 추진
- (중대재해)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에 대비한 대안 및 지원방안 등 마련
 - <u>안전관리 전문인력</u> 양성 및 <u>기업현장 수요충족</u> 기반 조성 등을 포함한 중소·중견기업 등 취약부문 안전관리자 확충방안 마련('23.4/4)
 - * 양성교육 이수시 자격인정 등 안전관리자 자격 확대, 안전보건 인력 운영 가이드 수립 등

② (교육개혁) 대학개혁, 국가책임 돌봄, 디지털 교육혁신 추진

- (대학) 규제개혁·한계대학 정비·지역대학 혁신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재정·세제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
 - ▶ (규제혁신) 학사, 재정운영 관련 규제 재검토 및 유학생 비자요건 완화 등
 - ▶ (한계대학)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입법 지원
 - ▶ (지역대학 혁신) 글로컬 대학을 선정(10개 내외)하여 5년간 약 1,000억원 지원 등

- <u>지방(전문)대 활성화, 첨단분야 인재양성 집중지원 등을 중심으로</u> 고등·평생교육 특별회계 확대(現 9.7조원) 추진
- <u>대학이 기존 수익용 자산 매각 후 새로운 수익용 자산을 대체</u> 취득시 수익용 자산 처분시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이연^{*} 추진
- * (現) 3년 거치 및 3년 분할익금 산입 \rightarrow (改) 새로 취득한 수익용 자산의 처분시까지
- (국가책임 교육-돌봄) 유보통합 시행('25~)을 착실히 준비하고 늘봄학교 시범사업 확대 및 지원체계 정비 추진
 - ▶ (유보통합) 교육부·시도교육청으로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마련 서비스격차 완화방안 수립, 어린이집-유치원 통합모델 시안 마련
 - ▶ (늘봄학교) 시범사업 확대[('23.3)214 → ('23.下)약300교], 운영체제·인력운용 제도화 국가·지자체 책무 등 법적 근거 마련(늘봄학교지원특별법)
- (디지털 교육)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디지털 교육체제로의 전환¹」을 지속 추진하고, 「에듀테크 진흥방안²」, 등 후속조치 마련
 - 1」AI 디지털교과서 도입, 디지털 기반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교원연수 등
 - 2」 디지털 교육기술·제품을 생산·개발하는 에듀테크 기업 성장 지원, 공교육 연계 등

③ (연금개혁)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선 및 효율적 운용체계 미련

- (국민연금)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「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」을 수립('23.10)하고 국민연금 운용성과 제고 및 사각지대 해소 추진
 - <u>기금운용본부의 역량·책임성 제고</u>1, 거버넌스 개선(전문성 강화 방안 마련 등)을 추진하고, 출산·군복무 크레딧 확대^{2,} 검토
 - 1」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인력 배치·기능 강화, 성과급 체계 개편 등
 - 2」(現) (출 산) 둘째 12개월, 셋째부터 18개월씩, 상한 50개월 가입기간 인정 (군복무) 6개월 가입기간 인정
- (건강보험)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을
 마련하여 「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('24~'28)」에 반영
 - * 행위별 수가제 외에 사후 보상, 성과 기반 차등보상 등 대안적 지불제 도입 추진
- (고용·산재보험) 신고사무 효율화를 위해 조세·사회보험 신고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전산체계(근로복지공단) 마련

3

- 금융·서비스산업·공공 3대 분야 혁신 및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규제 발굴·개선으로 우리경제 생산성 제고
- ① 서비스·공공·금융 3대 경제혁신 추진 가속화
- **(서비스)** 산업 구조변화 등을 반영한 「**서비스산업 혁신 전략**」을 수립("23.3/4)하고, 반려동물·콘텐츠 등 신성장 서비스산업 육성
 - * R&D, 新유망서비스업 지원 등 주제·분야별로 순차적 수립·발표
 - (반려동물) <u>펫푸드¹··펫보험²· 제도 정비, 반려동물 관련제품</u> R&D 지원 및 전문인력 육성 등 제반 인프라 조성
 - 1」 펫푸드 특화 분류체계 및 표시기준 개선방안 마련, 수입원재료 처리방법 확대 등
 - 2」보험상품을 다양화하고 보험사·동물병원 제휴를 통해 보험 청구 편의 제고
 - 반려동물 다빈도 질병의 **동물병원 진료**에 대한 **부가세 면제** 추진
 - * 외이염, 결막염, 개 아토피성 피부염, 무릎뼈 안쪽 탈구 등 100여개 질병
 - (콘텐츠·영화) <u>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을 국가전략기술 투자</u> 세액공제 수준으로 대폭 확대 추진
 - *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여 개편방안 마련(현: 대3%/중견7%/중소10%) [미 캘리포니아] 제작비 일정비율 이상 州내 지출 → 20~30% [프] 자국내 제작 → 20~30% 등
 - 중소·중견기업의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*에 대한 세제지원 추진
 - * 출자금액의 콘텐츠 분야 제작 사용여부 점검 등 관리·감독 시스템 강화 병행
 - <u>중소배급사의 한국영화 개봉을 지원하는 투자펀드 조성(모태</u> 펀드 활용) 등 영화업계 정상화를 위한 한시적 지원방안 마련
- (금융) <u>정책금융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하고</u> <u>정책금융협의회^{*}를 통해 추가 보완방안 지속 강구</u>
 - * 구성: 기재(주재)·산업·중기부·금융위 차관급 및 정책금융기관 부기관장급
 - ▶ 모든 정책금융 정보를 종합해 개별 기업별 상황에 적합한 검색·상담·신청을 지원하는 종합포털(^{가칭}정책금융 알리오) 운영
 - * (現) 기관별 사이트·공고 및 상담·신청섹션 등을 각각 확인 및 비교 필요 (改) 모든 기관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·비교 → 선택시 해당기관 상담·신청 연결
 - ▶ 산단 입주기업 등 대상으로 정책금융기관들이 찾아가는 합동설명회를 추진하고, 상담·심사 등 관련 기관별 개선방안(심사 절차 단순화 및 시간단축, 중간 피드백 제공 등) 마련

- (공공)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속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재정 관리체계 구축 등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하게 유지
 - <u>민간중심 경제 도약을 위해 공공기관 자원을 민간에 적극 개방·</u> 활용하는 「민간-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」 중점 추진
 -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 **공공데이터법·데이터기반행정법** 개정 추진

② 현장 중심 규제혁신으로 규제개혁 성과 및 체감도 제고

- (핵심규제 혁신) 7대 테마별 핵심규제 혁신*을 조속히 마무리 하고, 4+1(환경)개 분야 규제혁신 과제 추진
 - * (추진실적) ^{바이오헬스}의료 마이데이터 활성화, ^{묀켈리티}전기 이륜차 보급확대 지원, ^{에너지}연료 전지 보급·활용 강화, (잔여과제) ^{모텔리티}플랫폼 규제개선, ^{관광}도심 공유숙박 허용 등
 - <u>규제체감도 결과 등을 바탕으로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기업</u> 활동을 제약하는 4대 분야 규제를 집중 발굴·개선
 - ▶ (시장경쟁) 최소인력, 사무실 면적, 자본금 요건 등 시장진입을 가로막는 각종 인·허가 기준, 요건 전수조사 및 해소
 - ▶ (지방사업) 개발제한구역 해제, 국유지 임대·활용 등 관련 애로 해소
 - ▶ (산업단지) 산업단지 관련 현장투자 지연 요소 점검 및 개선
 - ▶ (중소벤처) 바이오·소상공인 등 중소벤처기업 관련 테마별 핵심규제 등 개선
 - <u>환경규제의 경우</u>,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**환경개선**, 국민안전 제고, 기업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·추진
 - * 민·산·관이 협의한 관리체계 개편안을 기반으로 화평법·화관법 개정안 마련('23.8)
- (추진방식 개선) 규제혁신 과제 발굴·개선 방식 등을 업그레이드
 - <u>분야별 샘플기업을 선정하여, 경영활동 전반을 둘러싼 모든</u> 규제를 점검하고 **개선을 검토하**는 규제혁신 방식 도입
 - <u>다수부처가 동일한 대상·사업을 중복으로 규제*하거나 유사한</u> 자료 등을 각각 요구하는 행위 등을 **일괄 정비**
 - * (예) 화관법상 환경부 수입허가와 산안법상 고용부 수입승인 제도 일원화(23.4/4)
 - <u>고시·가이드라인</u> 등 최하위 법령 단위에서 규정하는 「밑바닥 규제」를 일제 전수조사하여 현실에 부합하게 개선
- (경제형벌) <u>적극적 개선이 필요한 주요 경제법률을 선정하여</u>
 경제 형벌규정 개선 3차 과제 추진

◇ 경쟁 활성화, 불법·부당행위 근절 등으로 공정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고, 상생·경제교육 강화로 자유시장경제 기반 강화

① 경쟁 활성화 및 경제법치 확립 등으로 공정시장 원칙 확립

- (경쟁 활성화) 신규사업자 진입 확대 등을 통해 시장경쟁 원리 확산
 - (통신) 사업 초기 할당대가 부담 경감* 등 신규 진입 활성화 노력을 지속하고 세부 개선사항 발표(*23.7)
 - * (現) 1년차에 총액의 25% 납부(이후 균등 분납) → (改) 1년차 납부 부담 완화(이후 점증 분납)
 - (은행) 은행권 경영·영업 관행·제도 개선 TF를 통해 은행권 경쟁 촉진 등에 대한 <u>개선방안 마련·발표('23.7)</u>
 - * 은행권 경쟁촉진과 함께 비이자수익 확대 등을 통한 은행의 수익구조 개선, 미래에 대비한 충분한 손실흡수능력 제고 등 추진
- (경제법치) 경제 전반에 법에 근거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
 - (금융거래) 가상자산·증권시장 불법거래를 근절^{1」}하고, 불법 사금융·보이스피싱에 대한 사전예방, 피해보호 강화^{2」} 추진
 - 1」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제정 및 미신고 사업자 적발・단속 강화, 주가조작 제재 강화 등
 - 2」 불법사금융 광고차단, 취약계층 금융지원 강화 및 알뜰폰 부정이용 방지방안 마련 등
 - (노사·기업) 불공정채용, 상습 임금체불 등에 대한 법적 제재기반을 강화^{1」}하고, 중소기업 기술탈취 관련 구제수단 강화^{2」}
 - 1」 공정채용법 입법: 채용강요·고용세습 등 불공정채용 금자·제재, 부정채용자 채용취소 근거 마련 등 근로기준법 개정: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정부·지자체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 확대·강화
 - 2」 상생협력법·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시 법원의 행정조사 자료송부 요구권의 명확한 내용 규정
 - (국고·공공)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및 부정수급 점검 강화¹, 공공조달 분야 경쟁제한 요소개선², 역외탈세 엄정 대응 등 추진
 - 1」보조금법 정비: 외부 회계감사 대상: 10억원 → 3억원 이상 등
 - 2」 입찰담합 관계기관협의회를 통해 발주시 단독규격 지정 등 입찰담합 유발 행위 개선
 - (국민안전) <u>마약밀수 근절을 위해 단속 인프라(인력·조직·장비 등)를</u> 확충하고 주요국과 국제공조(태국·아세안 등) 강화

② 상생인프라 조성, 경제이해도 제고 등 자유시장경제 기반 강화

- (상생협력 확산) 납품대금연동제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계도기간을
 운영하고(10.4~12.31), 교육·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적응 지원
 - * 10.4일 납품대금연동제 시행, 계도기간 중에는 직권조사 미시행
 - <u>대-중소기업¹」간, 선-후배 중소·벤처기업²」간 상생협력 문화를</u> 확산하기 위한 **홍보·네트워킹 프로젝트** 추진
 - 1」 (WIN-WIN HONORS) 대-중소 상생 우수사례 TV 방송, 사례집 발간 등 홍보 강화
 - 2」(함께 성^{장하는} 프로젝트) 선배 중소·벤처기업인이 후배기업인에게 이익·지식 공유
- (기부활성화) 고액기부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¹, 착한 기부자에 대한 정부포상 승격·확대², 등 혜택을 강화
 - 1. (現) 1천만원 이하 15%, 1천만원 초과분 30% 세액공제
 - 2」(포상) ('22) 장관 표창 13점 → ('23) 대표 2, 국표 4, 장관 표창 13점 추진 (혜택) 공항출입국심사 우대 혜택 제공 등 검토
 - <u>사회복지법인의 **결산서류 작성부담**을 완화^{*}하고, **기부통합관리 시스템** 요구서식 **축소·자동화** 등 추진</u>
 - * (現) 상증세법(복식부기) 및 복지부령(단식부기) 재무제표 각각 작성 (改) 복지부령 재무제표: 단식-복식 선택가능하도록 관련규정 및 결산보고시스템 개선 추진
- (경제교육 강화) 거버넌스·콘텐츠 확충 및 기업가정신 고취
 - <u>지역경제교육센터 및 경제교육관리委를 확대*하고, KDI 경제</u> 교육실을 「경제교육센터」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 검토
 - * (現) 교육·행안·복지·고용부, 금융위 → (改) 산업·중기부 등까지 확대 추진
 - <u>경제교육 관련 학교 및 평생교육 콘텐츠를 보강*하고, 온라인</u> 교육을 위한 「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」구축('24)
 - * (학교교육) 교육과정별 교육자료 및 실용 경제지식을 보강한 '협업교과서' 개발 및 보급 (평생교육) 금융투자, 부동산근로계약 등 군 장병 등 대상 경제교육 프로그램 확대
 - 기업가정신 관련 신규 과목 편성¹, 창업친화 대학 지원² 강화
 - 1」'25년 새 교육과정 시행에 따라「발명과 기업가정신」등 고교 신규 과목 편성 추진
 - 2」 창업친화적 학사제도(휴학, 장학금 등) 운용 대학에 대해 창업지원사업 선정시 우대

4. 미래대비 기반 확충

- 1 저출산·고령화 대응
- ◇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·경제적 대응 여력 확충

① 핵심과제 중심의 민관합동 인구대응 체계 지속 가동

- (대응방향) 인구정책 4대 분야¹ 중심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·적응을 위한 주요 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²
 - 1」 ●경제활동인구 확충, ❷축소사회 대응, ◎고령사회 대비, ④저출산 대응
 - 2」「고령친화 주거지원대책」('23.3/4), 「농촌소멸 대응방안」('23.4/4), 「제4차 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계획」보완('23.4/4) 등
- (추진체계) 인구정책 추진체계를 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」및 「인구정책기획단*」으로 통합하고 범정부 대응 추진
 - * 기존 '인구위기대응TF(기재부 주관)' 및 '백세사회정책기획단(복지부저고위 주관)'을 통합

②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경제활동인구 확충

- (이민정책) 범정부 외국인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<u>해외 사례를</u> 참고한 정책 개편방안 마련('23.4/4)
 - * (예) 취업비자 체류기간 및 대상 업종 확대, 취업비자총량제 도입 검토, 숙련 인력 확대, 지역기반 비자제도 활성화 등
- (비자제도) 외국인력 공급관련 쿼터 확대^{*} 및 비자제도 개선 추진
 - * 하반기 고숙련인력(E-7-4) 비지쿼터 추가 확대, 차년도 저숙련인력(E-9) 비지쿼터 확대 검토
 - <u>지역특화비자*는 시범 운영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토대로</u> 사업 대상 지역 확대 시행('23.4/4)
 - * 지자체 추천 외국인 및 지자체내 동포가족 대상으로 해당 지역 일정기간 의무 거주 및 취업을 조건으로 거주(F-2)·동포(F-4) 비자 先발급 <現: 28개 지역>
- (인구감소지역) <u>획기적 규제특례 등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 수립</u>
 - ▶ (정주여건(안)) 비대면진료 제도화, 농어촌 외국인력 장기취업 확대, 농촌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
 - ▶ (투자유치(안)) 토지이용규제 개선, 공간혁신구역 도입 등 자율적 개발 지원, 신규 법인설립·투자시 혜택 부여 등

③ 가사노동 및 육아·출산 부담 경감 등 저출산 대응노력 확충

- (외국인 가사도우미) <u>시범사업*을 시행하고 현장수요 분석 등을</u> 토대로 확대여부 및 다각적 보완방안 등을 종합 검토('24)
 - * E-9의 가사서비스 인증기관 취업 허용 등
- (육아휴직) 대체인력 채용지원 강화*,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특고 등 사각지대 해소방안 검토
 - * 민간대체인력뱅크 운영기관(現 3개소) 확대
- (혼인) 혼인시 결혼자금에 한하여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 검토
- (양육비용)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(現 월10만원) 및 자녀장려금을 확대하고,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양육지원금에 대한 세제혜택* 제공
 - * 법인세 손금산입 허용 근거 마련

④ 사적연금 및 실버타운 활성화 등 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

- (사적연금) 퇴직연금 및 주택연금 등의 가입 인센티브 확대
 -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 상향(現 1,200만원), 주택연금 가입범위
 (공시가 9→12억원) 및 월 지급금 상향 추진
- (실버타운) 저소득층·중산층이 이용가능한 실버타운 활성화 추진
 - 저소득 고령층에게 임대주택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 확대('27년까지 매년 1,000호 공급)
 - 노인복지주택용 부동산 취득세·재산세 감면기한(*23) 연장 추진
 - <u>리츠 세제혜택^{*} 일몰 연장 등을 통해 헬스케어 리츠 출시를 지원하고</u> 노인복지주택 대상 **주택기금의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** 지원 **추진**
 - * 배당수익을 9.9%의 세율로 분리과세('23.末 일몰)
 - <u>입주자 부담 완화를 위해 노인복지주택의 월 이용금액중</u> 거주비 부분에 대한 **월세 세액공제 적용** 검토

2 국제연대·경제안보 강화

◇ 경제 중심 실리외교와 국제연대 강화로 수출·투자 등 실익확보를 도모하고, 공급망 등 경제안보 이슈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

① 경제중심 외교와 전략적 FTA 등을 통한 경제활로 모색

- (경제외교) 정상외교 경제성과 확산 등을 위한 후속과제 추진
 - ▶ (미) 반도체 유망분야 협력 구체화, 이공계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 추진 등
 - ▶ (일) 한-일간 항공노선 회복, 청소년·유학생 교류 확대, 반도체·공급망 협력 등
 - ▶ (폴란드) 한-폴란드 재무부간 대화채널 개설하여 방산수출 등 협력 강화
 - ▶ (U A E) 한-UAE 경제공동위('23.7) 등 통해 300억불 투자협력 조기성과 창출
- (ODA) ODA 확대 목표('19년 대비 '30년까지 2배 확대)를 조기 달성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발언권 제고 추진
 - ODA 기반 협력채널을 활용하여 아프리카, 중남미 지역과 공공·민간부문 교류 플랫폼 구축
 - * 제7차 한-아프리카경제협력 장관급회의('23.9, 부산) → 비즈니스 포럼, 투자설명회 등 제1차 한-중남미 혁신포럼('23.10, 멕시코) → 기업 세미나, 1:1 매칭 상담 주선 등
- (FTA) 신규 FTA 체결 및 후속·개선협상 등을 적극 추진하고¹,
 DEPA² 가입절차 완료를 통해 디지털 통상협력 확대
 - 1」한-에콰도르 SECA, 한-GCC FTA 등 협상 진전 및 몽골, 조지아와 EPA 협상 개시 추진, 중국·인도·칠레·영국 등과 FTA 후속·개선협상 진전·개시 추진
 - 2」 **D**igital **E**conomy **P**artnership **A**greement :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과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된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경제 협정 (현재 싱·뉴·칠 3개국)

② 공급망 안정을 위한 국제협력 및 국가 대응체계 강화

- **(거버넌스 강화)** 공급망 3법 제정 및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<u>高 리스크 품목 중심으로 **컨틴전시 플랜 마련**</u>
 - <u>조기경보시스템 및 공급망지도 고도화*를 추진하고, 핵심광물</u> 비축확대·수입선 다변화·해외생산기지 구축 지원 강화
 - * 조기경보시스템(수입품목→수출품목 추가), 공급망지도(소부장 품목 등 추가)
 - 주요국과의 협력채널을 강화하고*, IPEF 공급망 협정 협상타결 ('23.5)에 따른 후속 국내절차 등 추진
 - * (인니) 핵심광물 공동연구센터 설립, (베트남) 광물자원 탐사:개발 기술 협력 등

- (인센티브 확충) 수은 글로벌공급망 지원 프로그램*을 적기 집행하고 공급망기본법 통과시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신속히 설치
 - * 필수원자재 확보, 핵심기술 국산화, 글로벌 생산거점 확충 등 관련 유동성 공급
 - 핵심광물의 정·제련, 재자원화 기술 등을 투자·R&D시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신성장·원천기술에 추가

3 기후·에너지 위기 대응

◇ 에너지 사용 효율화, 원전생태계 복원, 과학과 합리 기반의 탄소 중립 이행 등을 통해 기후·에너지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

① 에너지 사용 효율화, 원전생태계 복원 등 에너지위기 대응기반 강화

- (에너지 절약) 소상공인 노후 냉방기 교체·냉장고 문달기 신규 지원, 도로조명 LED 전환 확대 등 에너지 이용 효율화 유도
 - ▶ (소상공인) 노후 냉방기 교체(1.9만대) 및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(1만대) 설치비용 지원(소요 비용의 40%) 신규 추진('23~'24 한시)
 - ► (중소기업) 에너지 절감효과가 높은 효율향상 핵심설비* 지원물량을 기존 대비 약 50% 이상 확대(300 → 500대)
 - * 삼상유도전동기, 공기압축기, 멀티 전기히트펌프, 전기냉난방기, 인버터 등
 - ▶ (공공부문) 전국 도로조명 LED 전환에 대한 공공지원 확대
 - * (現) 국비 30%+지방비 30%+민간금융 40% → (改) 국비 30%+지방비 70% 방식 추가
 - <u>에너지 효율 향상 핵심기술을 투자·R&D시 세제혜택이 적용</u> 되는 신성장·원천기술에 추가 검토
 - 하절기(7~9월) 에너지 절감목표 부여 등 **공공부문 솔선수범** 노력과 함께 **범국민적 에너지 절약 유동** 추진
- (원전생태계 복원) 원전산업을 위한 금융·기술·인력 지원 등 지속
 - ▶ (금융) 원전관련 중소·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설비투자, R&D 등 저금리 대출, 해외 원전수주기업 수출보증 등 금융지원 프로그램 제공
 - ▶ (R&D) 원전산업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에 R&D 집중 투자
 - ▶ (인력) 대학·대학원 중심으로 원전분야에 대한 양질의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중소·중견기업의 안정적 인력수급 지원

② 기후대응기금 및 탄소배출권 활용을 통해 탄소중립 뒷받침

- (기후대응기금) <u>탄소중립포인트제* 사업을 확대하고</u>, 기금사업 성과지표 관리를 강화하여 향후 예산편성시 반영
 - * 하반기중 에너지 사용량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하반기중 +8억원 확대
- (탄소배출권) 탄소배출권 시장활성화 방안^{1」}을 마련하고 중장기 제도개선 대책을 담은 「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^{2」} | 수립 추진
 - 1」 시장 참여자 확대, 배출권 연계 투자상품 다양화, 이월한도(배출권 순매도량의 1배) 완화 등
 - 2」 NDC 목표를 감안한 배출허용총량 설정, 유상할당·배출효율기준(BM)할당 확대 등

③ 탄소중립 이행 촉진을 위한 분야별 지원방안 마련·추진

- (공공부문) 정부·공공기관(건물·수송 분야 등)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공부문 탄소중립 선도계획 수립('23.12)
 - <u>탄소중립실현을 위한 국민의 참신한 **아이디어**를 **발굴*·고도화**하여</u> **탄소중립 기술·제품 사업화** 전략 수립 지원
 - * 아이디어로(Idearo) 등 지식재산권 거래 플랫폼 활용하여 발굴
 - 저탄소 전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정의로운 전환특구를 지정하고 (2개소 내외), 재편대상 사업·기업 등 구체적 지원기준 마련
- (기업·기술지원) 분야별 탄소중립 기술 혁신 전략 로드맵 확대 수립
 - * (現) 철강, 석유화학, 시멘트 \rightarrow (改) 태양광, 탄소중립 선박 등
 - <u>업종별 민·관합동 협의체를 통해 주요 탄소 多배출 업종의</u> <u>탄소중립 지원방안 마련 추진</u>
 - **철스크랩¹」, 다회용기²」** 등 **순환경제 활성화**를 통해 자원·에너지 절약 및 연관산업 활성화 도모
 - 1」 순환자원으로 지정하여 폐기물에서 제외하고, 물량확보 및 해외유출 예방 추진
 - 2」 제조세척 위생기준 마련, 전국 지역자활센터 세척사업단 지속 확대 등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확충, 커피전문점, 음식점 등 유형별로 표준화된 정책방향 제시

2023년 상세 경제전망

1. 대외 여건

□ 세계경제는 부문별 회복세가 차별화되는 가운데 불확실성 지속

- (성장) 상반기 세계경제는 美 고용·소비 회복세, 中 리오프닝 효과 등으로 서비스업 중심으로 예상을 상회하는 성장세 시현
 - 다만, IT부문 등 제조업 경기는 누적된 재고 등으로 부진
 - * 글로벌 PMI(p): <제조업>('23.1)49.1 (3)49.6 (5)49.6 <서비스업>('23.1)50.1 (3)54.4 (5)55.5
 - 향후 고금리 영향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겠으나, 그간 부진했던 제조업 경기는 재고조정, IT 수요회복 등으로 점차 개선 전망
 - * 글로벌 D램 공급초과율(%): ('22.4/4)11.8 ('23.1/4)12.9 (2/4°)4.5 (3/4°)△7.9 (4/4°)△10.7
 - 다만, 통화 긴축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우려, 지정학적 리스크
 등 세계경제 하방위험 지속

세계경제 성장률 전망(%, OECD<'23.6월>)

	세계	G20	미국	유로존	영국	일본	중국	인도
′22년	3.3	3.1	2.1	3.5	4.1	1.0	3.0	7.2
′23년 ^e	2.7	2.8	1.6	0.9	0.3	1.3	5.4	6.0
	2.9	2.9	1.0	1.5	1.0	1.1	5.1	7.0

- (물가) 원자재가격 하락 등으로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둔화 되는 가운데, 서비스 가격 등 근원물가는 높은 수준 지속

 - 국제유가 안정세, 기저효과 등으로 물가 둔화 흐름이 이어 지겠으나, 러-우 전쟁, 경기 회복 속도 등 관련 불확실성 상존

세계경제 물가상승률 전망(%, OECD<'23.6월>)

	G20	미국	유로존	영국	일본	중국	인도
′22년	7.8	6.2	8.4	9.1	2.5	1.9	6.7
′23년 ^e	6.1	3.9	5.8	6.9	2.8	2.1	4.8
	4.7	2.6	3.2	2.8	2.0	2.0	4.4

○ (금융시장) SVB 사태 이후 시장 변동성은 다소 완화되었으나, 고강도 긴축 영향 등에 따른 취약부문 잠재 리스크 부각 우려

2. 국내경제 전망

1 경제 성장

□ (GDP) 실질 GDP 1.4% 성장, 경상 GDP 3.4% 성장 전망

【실질성장률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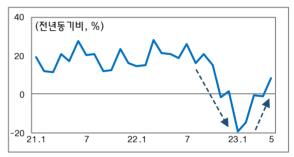
- 교역 문화 등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금년 성장률은 당초 예상(1.6%)을 소폭 하회하겠으나, 하반기 성장률은 상반기 대비 반등 예상
 - 민간소비가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, 반도체를 중심 으로 수출이 개선되며 하반기 성장세 회복을 견인할 전망

'23년 세계교역 및 D램 매출 전망 변화



* 출처 : OECD / Gartner

반도체 수출 물량 증감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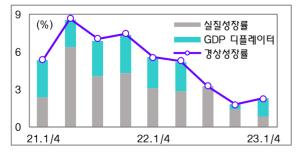


* 출처 : 한국은행

[경상성장률]

- **경상성장률**은 **실질성장률과 디플레이터 상승폭**이 당초 예상 보다 낮아지면서 **3.4% 성장** 전망
 - * 경상성장률(%, 당초→수정) : 4.0→**3.4** [<실질>1.6→**1.4** + <디플레이터> 2.4→**2.0**]
 - 디플레이터는 유가 등 원자재 수입가격의 큰 폭 하락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으로 작년(1.3%) 대비 상승세 확대 예상

경상·실질성장률 및 디플레이터 추이



* 출처 : 한국은행

두바이유 가격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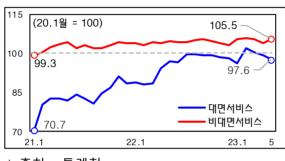


* 출처 : 페트로넷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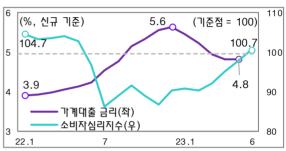
② (민간소비) 연간 2.5% 증가 전망

- 민간소비는 외부활동 증가, 양호한 고용상황,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대면서비스업 중심의 **완만한 회복**세 지속 전망
 - * 국내카드승인액(조원, 여신협회) : ('23.1)93.0 (2)87.5 (3)97.0 (4)93.9 (5)102.6
 - 다만, 보복소비 완화, 금리 인상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
 증가 등은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

대면·비대면 서비스업 생산 추이



<u> 가계대출금리 및 소비자심리 추이</u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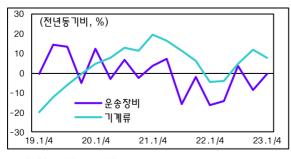


* 출처 : 통계청 * 출처 : 한국은행

③ (설비투자) 연간 △1.2% 감소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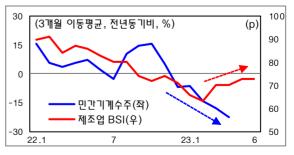
- 설비투자는 작년 하반기 공급망 차질이 완화되며 반등하였으나, 반도체 업황 문화 영향 등으로 14분기 감소 전환
 - * 설비투자(전기비, %) : ('22.1/4)△4.2 (2/4)1.6 (3/4)7.0 (4/4)2.4 ('23.1/4)△5.0
 - 주요 반도체 업체 감산, 고금리 영향 및 기계수주 감소 등
 감안시 회복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전망
 - 다만, 최근 기업심리 개선, 임시투자세액공제 시한('23년말) 등은 하반기 투자 개선요인으로 작용할 소지

부문별 설비투자 추이



* 출처 : 한국은행

민간기계수주 및 제조업 BSI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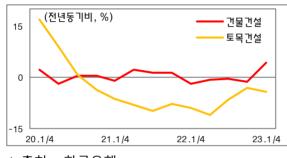


* 출처 : 한국은행, 통계청

[4] (건설투자) 연간 0.6% 증가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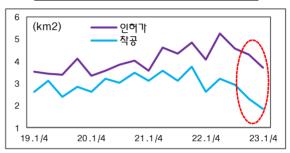
- 건설투자는 이연된 공사 재개 등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였으나, 건설사 자금조달 애로, 수주·착공 감소 등이 회복세 제약 전망
 - * 건설투자(전기비, %): ('22.1/4) △2.5 (2/4) △0.6 (3/4) △0.1 (4/4)1.3 ('23.1/4)1.3
 - ** 건축수주(전년동기비, %): ('22.4/4)△19.1 ('23.1/4)△23.2 (4)△53.4 (5)△45.0
- 토목건설의 경우 대규모 플랜트 수주 확대, SOC 예산 축소 등 상·하방 요인 상존
 - * 토목수주(전년동기비, %): ('22.4/4)△13.2 ('23.1/4)31.3 (4)△18.4 (5)36.2

형태별 건설투자 추이



* 출처 : 한국은행

건물 인허가 및 착공면적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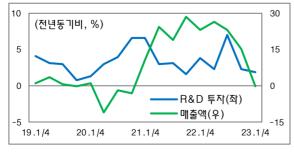


* 출처 : 국토교통부

④ (지식재산생산물투자) 연간 3.0% 증가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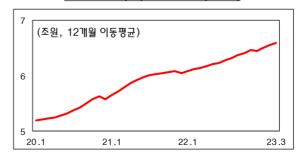
-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디지털 전환수요 확대 및 콘텐츠시장 성장, 정부 정책지원 강화 등에 힘입어 증가세 지속 예상
 - * 지재투자(전기비, %): ('22.1/4)1.1 (2/4) △ 0.5 (3/4)5.0 (4/4) △ 2.9 ('23.1/4)0.9
 - ** 세계 콘텐츠시장 규모(십억불, SPRI): ('19) 2,210 ('21) 2,905 ('23°) 3,661
- 최근 기업의 영업이익 악화는 단기적 제약요인으로 작용 하겠으나, 정부·민간의 R&D 투자 확대 기조는 이어질 전망

R&D 투자 및 상장기업 매출액 추이



* 출처 : 한국은행, VALUE-SEARCH

소프트웨어 생산 매출액



* 출처 : 통계청

[5] (수출(통관)) 연간 △6.6% / (수입(통관)) 연간 △8.6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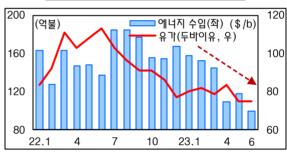
- ① (수출)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부진했던 수출은 기저효과, IT업황 개선 등으로 하반기 점차 회복 예상
 - * 수출(전년동기비, %) : ('22.4/4)△10.0 ('23.1/4)△12.7 (4)△14.4 (5)△15.2 (6)△6.0
 - 자동차·이차전지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, 반도체 수출이 재고조정 과정을 거치며 실적 개선 전망
 - * 자동차 수출(전년동기비, %) : ('23.3)63.6 (4)40.3 (5)49.3 (6)58.3
 - ** 반도체 수출(전년동기비, %): ('23.3)△34.5 (4)△41.0 (5)△36.2 (6)△28.0
 - 다만, 美·中 등 주요국 경기문화 우려, 반도체 업황 회복 지연 가능성 등은 하방리스크
- ② (수입) 국제에너지 가격 하락, 투자 부진에 따른 원자재·자본재 수입 둔화 등으로 상당폭 감소 전망
 - * 수입(전년동기비, %) : ('22.4/4)3.1 ('23.1/4)△2.2 (4)△13.3 (5)△14.0 (6)△11.7

반도체 · 對中 수출 추이

50 25 0 -25 -50 (전년동월비, %) 22.1 4 7 10 23.1 4 6

* 출처 : 무역협회

<u>국제유가 및 에너지 수입액</u>



* 출처: 페트로넷, 관세청

- ❸ (경상수지)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에도 불구, 소득수지 흑자 큰 폭 확대, 상품수지 회복 등으로 230억불 수준 흑자 전망
 - * 경상수지(억불): ('22)298 ('23.1)△42 (2)△5 (3)2 (4)△8
 - (상품수지) 하반기 무역수지 개선 등으로 '22년 대비 흑자폭 확대
 - (상품外수지) 세법개정에 따른 배당수입 확대 등으로 소득수지는 개선되겠으나 해외여행 확대로 여행수지는 악화될 전망
 - * 소득수지(1~4월, 억불) : ('18)△66 ('19)△54 ('20)△5 ('21)△20 ('22)6 ('23)123
 - ** 내국인 해외관광객(만명) : ('22.12)139 ('23.1)178 (2)172 (3)147 (4)150 (5)168

① '23년 취업자수는 32만명 수준 증가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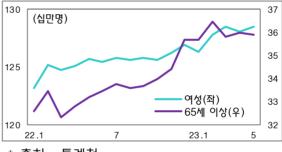
- 고용은 대면서비스·보건복지업 중심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 하며 당초 예상을 큰 폭 상회할 전망
 - * 취업자수 증감(전년동기비, 만명): ('23.1)41.1 (2)31.2 (3)46.9 (4)35.4 (5)35.1 ↳ 1~5월 평균 : (전체) 37.9 / (서비스업) 46.9 [<숙박음식>17.3 <보건복지>18.3]
- 고령층 돌봄수요 증가 및 여성·고령층 노동공급 확대 등 구조적 요인도 고용 증가를 뒷받침
 - 다만, 방역인력 감소, 제조업·건설업 문화 영향 등은 증가세 제약요인으로 작용 가능성
 - * 제조업/건설업 취업자 증감(전년동기비, 만명) : ('23.3)△4.9/△2.0 (4)△9.7/△3.1 (5)△3.9/△6.6

서비스업 부문별 고용 추이

여성 고령층 경제활동 인구 추이







* 출처 : 통계청

② 고용률 0.4%p 상승, 실업률 △0.2%p 하락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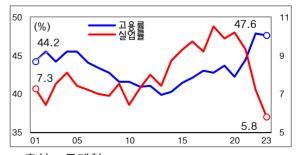
- 취업자 증가세가 이어지며 고용률은 상승('22년 62.1 → '23년 62.5%), 실업률은 하락('22년 2.9 → '23년 2.7%) 예상
 - 청년층(15~29세) 고용률과 실업률도 양호한 흐름 지속중
 - * 15~29세 고용률/실업률(%, 5월기준): ('21)44.4/9.3 ('22)47.8/7.2 ('23)47.6/5.8

취업자수 추이

28.5 (백만명, S.A.) 28 27 26.5 26 <u>-</u> 21.1 22 1 23.1 5

* 출처 : 통계청

청년 고용률·실업률 추이(5월 기준)



* 출처 : 통계청

□ 물가 둔화 흐름이 지속되며 연간 3.3% 상승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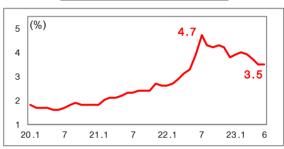
- 물가는 에너지·곡물 등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, 농산물 작황 개선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
 - * 소비자물가(전년동기비, %): ('22.4/4)5.3 ('23.1)5.2 (2)4.8 (3)4.2 (4)3.7 (5)3.3 (6)2.7
 - 그간 높은 상숭세를 보였던 서비스 물가는 원가부담 완화 등으로 와만하게 오름폭 축소 가능성
 - * 개인서비스 물가(전년동기비,%): ('22.4/4)6.2 ('23.1)5.9 (2)5.7 (3)5.8 (4)6.1 (5)5.6 (6)5.0

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

(전년동월비,%) 소비자물가 4 근원물가 2 0 22.1 23.1 20.1

* 출처 : 통계청

기대인플레이션율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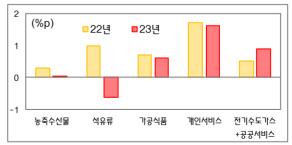
- * 출처 : 한국은행
- 향후 국제유가 안정세 유지, 기대인플레이션 하락 등으로 물가 둔화 흐름 지속 예상
 - * 기대인플레이션(%): ('22.4/4)4.1 ('23.1)3.9 (2)4.0 (3)3.9 (4)3.7 (5)3.5 (6)3.5
 - 다만, 기상여건, 지정학적 리스크* 등에 따른 국제 원자재가격 불확실성과 일부 누적된 요금인상 압력 등 부담요인 상존
 - * 러·우 전쟁 향방, OPEC⁺ 추가감산 여부, 흑해곡물협정(~'23.7월) 연장 여부 등

국제유가 예상경로



* 출처: 페트로넷, 자체 추정

품목별 기여도 전망



* 출처 : 자체 추정

2023~2024년 경제전망 요약

(전년동기비, %)

	′22년	′22년 ′23년		′24년 ^e
	실적	1/4	연간 ^e	연간
전망 전제				
세계경제(PPP)*	3.3	-	2.7	2.9
Dubai 유가(\$/bbl)	96	80	78	80
실질 GDP	2.6	0.9	1.4	2.4
민간소비	4.1	4.6	2.5	2.2
설비투자	△0.9	5.9	△1.2	2.5
건설투자	△2.8	1.9	0.6	0.2
지식재산생산물투자	5.0	2.4	3.0	3.8
경상 GDP	3.9	2.3	3.4	4.9
고용률(15세 이상, %)	62.1	61.2	62.5	62.7
취업자 증감(만명)	81.6	39.7	32	18
소비자물가	5.1	4.7	3.3	2.3
경상수지(억달러)	298	△46	230	450
상품수지(억달러)	151	△99	180	580
수출(통관,%)	6.1	△12.7	△6.6	8.8
수입(통관,%)	18.9	△2.2	△8.6	3.0
서비스·본원·이전 소득수지(억달러)	147	53	50	△130

^{*} OECD Economic Outlook ('23.6월)

별첨 2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요 정책 캘린더

1. '23.7월 주요 추진과제

정책 과제	부처 · 기관
• 예보 금융안정계정 도입	금융위
• 「찾아가는 원스톱 수출 119」구축	기재부
• 우수 수출 중소기업 대상 세정지원·관세조사 유예 확대	관세청
• 보세제도 규제혁신방안 마련	관세청
• 정책 금융기관이 대표 금융주선자로 취득한 대출채권 거래 활성화 지원	기재부
• 항만배후단지 임대면적 제한 완화	해수부
• 벤처투자 관련 모태펀드 운용 효율화(세컨더리 펀드 조성 등)	중기부
• 벤처기업 외부전문가 스톡옵션 부여 범위 확대	중기부
• 「스타트업 코리아 대책」마련	중기부
• 반려동물 동반 관광상품 운영(댕댕쇼핑왕)	문체부
• 해외카드 예약 및 결제서비스 제공(SRT)	국토부·문체부
• 무료 왕복항공권 증정 및 K-스탑오버 관광상품 출시	국토부
• CNG 연동보조금 신설 및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 재시행	기재부
• 알뜰교통카드플러스 시행	국토부
• '23년 2학기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 동결	교육부
• 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대한 규제 한시 완화(RTI, DSR)	금융위
• 임대사업자 의무보증 가입요건 개선	국토부
•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작년 수준(60%) 유지	기재부
• 디딤돌·버팀목 대출 등 주택 구입·전세자금 23조원 추가 공급	기재부·국토부
• 청년층 전세금 반환보증료 지원(최대 30만원)	국토부
• 등록임대주택의 부속토지 종부세 합산배제	기재부
• 정비사업 기부채납 기준 명확화 및 제도 합리화	국토부
• 공공 참여형 소규모정비사업 후보지 공모 추진 및 제도개선	국토부
• 제2차 빈일자리 대책 마련	기재부
•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	산업부
•「에듀테크 진흥방안」마련	교육부
•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수립	과기정통부
• 은행권 경쟁 촉진 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	금융위
• 에너지 사용 효율화 지원 확대 및 인식제고 노력	산업부
• 다회용기 등 순환경제 활성화	환경부

2. '23.8월 주요 추진과제

정채	과제
07	프게

부처 · 기관

• HUG 중도금대출 보증비율 상향(80→90%)	국토부
• 26조원 시설투자자금 공급 및 공급 가속화	금융위·중기부
• 사업재편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확대	산업부
• 지역 인프라 확충 추진단(범부처TF) 신설	기재부·국토부
• 비수도권 대상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한시 상향	기재부·국토부
• 지역산단 체계 및 지원방식 개편방안 마련	국토부·산업부
• 야간관광특화도시 연계 철도·셔틀버스 운영	문체부
• '여행이 있는 주말' 단기 여행프로그램 운영	문체부
• 소상공인 등 대상 수도요금 감면 지원('23년 한시)	환경부
• '24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최소화 검토	복지부
• 근로시간 개편 보완방안 마련	고용부
• 「유보통합 서비스격차 완화방안」마련	교육부
• 「 ^{가칭} 늘봄학교지원특별법」 발의	교육부
•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추진	고용부·법무부

3. '23.9월 주요 추진과제

정책 과제	부처 · 기관
-------	---------

•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이중과세 해소	기재부
• 중소기업·수출 다변화 성공기업 금융지원 강화	중기부
• 국내 건설사 해외 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	기재부
• 임시투자세액공제 활용도 제고(간담회, 컨설팅 등)	국세청
• 외투기업 종사 외국인 근로자 세제혜택(소득세 감면 일몰 연장 등)	기재부
• 민자사업 관련 절차, 규제 등 개선	기재부
• 민자사업 부가세 영세율 적용 특례 일몰 연장	기재부
• 가업승계 세부담 완화	기재부
• 민간 벤처 모펀드 세제혜택을 통한 1호 펀드 조성 추진 [벤처3법❶]	금융위·중기부
• 일반지주회사 창업기획자 보유 허용 추진 [벤처3법❷]	공정위·중기부
• 일반지주회사 cvc 외부출자 요건 완화 추진 [벤처3법❸]	공정위·중기부
• M&A제도 보완을 위한 상법 개정	법무부

정책 과제

	부처 · 기관
1	
	중기부
	기재부
	중기부
	기재부
	교육부
	기재부
	기재부
	기재부
	고용부
	고용부
	기재부
	기재부·금융위
	기재부
	중기부
	복지부
	산업부
	기재부
	기재부
	기재부
	기재부·교육부
	기재부
	기재부
	기재부
	중기부
	기재부
	기재부
1	

• 중소·벤처 M&A 활성화 방안 마련	중기부
• 기회발전특구 관련 세제혜택	기재부
• 동행축제 개최	중기부
•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 확대조치 일몰 연장	기재부
• 교복·생활복 구입비 및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확대	교육부
•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 일몰 연장	기재부
•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	기재부
• 주택청약종합저축 연간 소득공제 한도 상향	기재부
• 제4차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('23~'27) 수립	고용부
• 직업훈련기관 평가 내실화 및 인센티브 강화방안 마련	고용부
•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일몰연장 및 대상 확대	기재부
• 장병 내일준비적금 비과세 일몰 연장 및 청년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기간 연장	기재부·금융위
• 신용카드 결제금액 등 대상 자영업자 부가세 공제특례 일몰 연장	기재부
•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및 이용자 편의 제고	중기부
•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합리적 평가체계 마련	복지부
• 국가별 R&D 협력 등 종합전략 수립	산업부
•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및 대상 조정	기재부
• 신성장 4.0 관련 디지털 이코노미포럼 개최	기재부
• 노조 회계공시의무-세제혜택 연계	기재부
• 고등·평생교육 특별회계 확대	기재부·교육부
• 대학의 수익용 자산 대체취득시 과세이연	기재부
•「서비스산업 혁신전략」수립	기재부
•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	기재부
• 중소기업 기술탈취 구제수단 강화	중기부
• 자녀장려금 확대	기재부
•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 상향	기재부
• 실버타운 관련 세제혜택 제공(부동산 취득세·재산세 감면기한 연장 등)	기재부·행안부
• 혼인시 증여재산 공제한도 확대 검토	기재부
• 제7차 한-아프리카경제협력 장관급 회의(KOAFEC) 개최	기재부

4. '23.10월 주요 추진과제

정책	과제

부처 · 기관

• 수출바우처 사용기관 자율선택 분야 확대	중기부
• 인도·베트남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 개통	관세청
• 한-인니 EDPF 협력약정 체결	기재부
• 민자사업 신용보증 한도 및 보증규모 확대	기재부·금융위
• 경복궁·창덕궁 야간관람프로그램 외국어해설 재개·확대	문화재청
• 신혼부부 주택구입, 전세자금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	국토부
• 창업중심대학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일반 지역청년에 개방	중기부
• 한계도전형 R&D 시범과제 착수	과기정통부
• 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 및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시행	중기부
• 글로컬대학 선정	교육부
• 「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」마련	복지부
• 납품대금연동제 계도기간 운영 및 컨설팅 제공	공정위·중기부
• 주택연금 월 지급금 상향 추진	금융위

5. '23.11월 주요 추진과제

정책 과제	부처 · 기관
-------	---------

• 중소·벤처기업 전용 M&A 플랫폼 구축	중기부
•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설비투자·토지매입 보조율 상향	산업부
•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확대	산업부
• 코리아세일페스타 개최	산업부
• 야간관광특화도시 연계 KTX·SRT 할인	국토부
• 숙박쿠폰 지원(약 30만장)	문체부
•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	농식품부
• 통합 온라인 고용서비스 플랫폼 시범 개시	고용부
• 지역특화 비자 대상지역 확대	법무부
• 정의로운 전환특구 지정	고용부·산업부

6. '23.12월 주요 추진과제

정책 과제

부처 · 기관

	71 TU H
• 국고채 전문딜러 평가 개선방안 마련	기재부
• 대출대환시(변동→고정) 중도수수료 완화	금융위
• 건설사 PF대출 보증요건 완화 및 회사채 발행지원	국토부·금융위
• 국내 최초 완전 자동화 컨 터미널 준공	해수부
• 고부가 EDCF 사업 승인 및 EDCF 기본약정 신규체결·증액	기재부
• 한-필리핀 EDPF 협력약정 체결	기재부
• 반도체 등 제조설비의 물품운반용기구 등 재수출면세 적용	기재부·관세청
• 항만배후단지 입주업종 제한 완화	해수부
• 첨단전략산업 유턴기업 지원 강화	산업부
• 벤처기업 대상 성과조건부 주식제도 특례 도입	중기부
•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한 표준시장단가 관리체계 개편	국토부
• 자재비 급등으로 공기 지연시 지체상금 면제	기재부
• 내국인 도심 공유숙박 실증특례 지역 확대	과기정통부
• 내국인 공유숙박 제도화 방안 마련	문체부
• PB상품 활성화 등 유통구조 개선 추진	산업부
• 공급망 취약물품(감자 등) 수입국 다변화	농식품부
•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인하	복지부
• 저소득층을 위한「대학생 패키지」지원방안 마련	교육부
•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 연장(23.末→25.末)	고용부
•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	복지부
• 새출발기금 요건 완화화여 영세 소상공인·자영업자 재기지원 확대	기재부·금융위
• 해외결제사와 소상공인 간편 결제시스템간 제휴 확대	중기부
• 국산 AI 반도체 데이터센터 구축(K-클라우드)	과기정통부
• 어린이집-유치원 통합모델 시안 마련	교육부
•「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」에 건강보험 개혁방안 반영	복지부
• 반려동물 다빈도 질병의 동물병원 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	기재부
• 고액기부 세제지원 확대 및 착한기부자 인센티브 강화	기재부·행안부
• 기부통합관리시스템 요구서식 축소·자동화	행안부
• 외국인정책 개편방안 마련	법무부
• 실버타운 대상 주택기금의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 지원 추진	국토부
• 조기경보시스템 및 공급망지도 고도화	관세청·산업부
• IPEF 공급망 협정 협상타결 후속 국내절차 추진	산업부
• 탄소중립포인트제 확대	환경부
• 탄소배출권 시장활성화 방안 마련	환경부
• 공공부문 탄소중립 선도계획 수립	환경부
• 주요 탄소 多배출 업종의 탄소중립 지원방안 마련	산업부